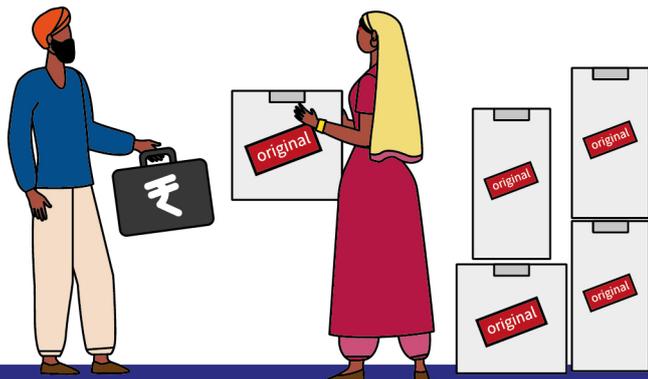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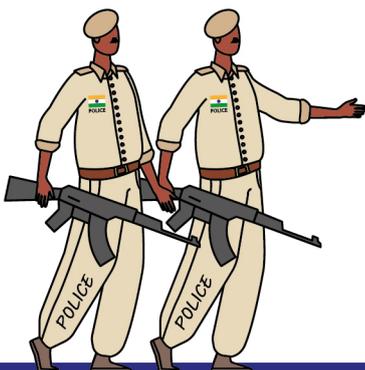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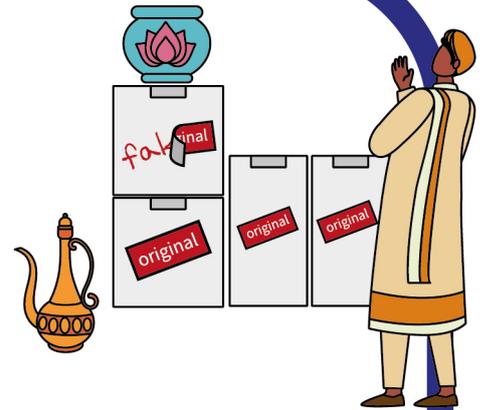


인도 위조상품 유통 대응 가이드

2020년 10월



00.	서문				05p
------------	-----------	--	--	--	-----

01.	인도의 지식재산권 - 개론				06p
------------	---------------------------	--	--	--	-----

02.	인도의 지식재산권 체제	인도의 지식재산권 법 개요			10p
		인도의 지식재산권에 적용되는 현행법			10p
		인도의 지식재산권 사무소			10p
		인도의 지식재산권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권			11p

03.	인도의 위조품 시장	서론	13p	인도에서 위조 문제의 규모	15p
		인도 위조품 시장의 배경	14p	인도에서 발생하는 위조의 형태	16p
		위조에 대한 이해	14p	위조의 주요 영향	17p
		법적 정의		인도의 주요 위조품 시장	17p
		용어			

04.	인도에서 위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	자동차 부품 및 예비 부품			18p
		휴대 전화			20p
		소프트웨어			21p
		컴퓨터 하드웨어			22p
		제약			22p
		FMCG(일용소비재)			23p
		미디어 불법복제			24p

05. 인도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 및 유형	상표권 침해	25p	저작권 침해	27p				
	등록상표의 침해		주요 요소					
	상표권 침해의 주요 요소		디자인 침해	27p				
	등록상표의 희석		주요 요소					
	상표 희석의 주요 요소		특허 침해	27p				
	미등록상표의 사칭통용		주요 요소					
	미등록상표 사칭통용의 주요 요소							
	주지상표의 국경 간 평판							
06. 인도 위조상품 대응 방안	인도에서 만연한 위조 및 불법복제를 유발하는 요인			29p				
	인도의 위조 방지 절차 및 전략			30p				
07. 위조에 관한 사례 연구	인도에 한국 진출			39p				
	인도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			40p				
	한국 기업의 위조 방지 사례			41p				
	다른 국가의 기업이 위조에 대해 취한 조치			42p				
부록. 01	인도의 지식재산권 법	45p	02	약어 목록	49p	03	위조방지 조치를 위한 인도내 기관 목록	50p
	상표법			인도의 지식재산권 기관				
	저작권법			- 정부 기관			- 민간 기관	
	디자인법			인도가 소속된 국제 태스크 포스			위조 방지 조직	
	특허법			관련 법령 및 참고문헌				52p

00.

서문

지난 수십 년 간 지식재산권의 위조, 불법복제 및 복제로 인해 전 세계 경제주체와 기업체,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이하 'WTO') 체제 하에서 글로벌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여러 산업, 부문 또는 영역에서 예상되는 성장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인도는 소비자 시장과 국제 무역의 주요 기여자로서 전례 없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경쟁 상대가 없는 인도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글로벌 기업체와 다국적 기업들(MNCs, multinational companies)은 특정 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 장애, 부작용 없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용이성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도 시장에서 상시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도 내 많은 사람들이 인도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 확장성 및 복잡한 법 집행 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인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매우 쉽게 가능하면서 동시에 '대처하거나 금지'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인상을 준다.

인도는 1980년대까지의 후진적이고 극도로 제한되고 통제된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경제 자유화의 길을 택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30년간의 인도 지도부에 의한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로 이어졌으며, '공정 무역'과 '적절한 집행'을 촉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과거 인도 경제 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자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된 이래, 인도 정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을 개선 할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집행 수준을 높이고 등록을 위한 단순화된 지식재산권 기반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법 집행 기관과 사법부를 포함한 인도의 법률 시스템은 지난 20-30년 동안 지식재산권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열정과 전문성을 보여 왔다. 최근 몇 년 간 인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판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명확한 지표에서 보여주듯이 법 집행 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 내에서 효과적이고 개선된 지식재산권 체제를 위한 여러 긍정적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Counterfeit goods)', '불법복제(Piracy)' 및 조직적인 지식재산권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 of IPRs)'는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산업체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법적 제도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불법적인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가담할 경우 엄청난 수익과 전례 없는 수준의 이윤을 거두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인과 상인,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에 유인되고 있으며, 인도 시장이 규모, 구매력, 꾸준한 수요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핸드북에서는 침해와 위조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목록과 인도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조(Counterfeiting)', '불법복제' 및 이와 같은 관련 침해 형태에 중점을 두어 한국 기업들에게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에 대한 기본 정보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전략, 프로세스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핸드북을 통해 '인도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가 인도 내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기업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제한된 정보'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초기 수준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인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 등이 과거에 기울었던 노력과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와 실제 사례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위조 및 불법 복제를 다루면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취하게 되는 일반적인 조치, 방안 및 단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01.

지식재산권 개론 인도의 지식재산권

인도는 엄청난 잠재력의 땅으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인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토지 면적이 7번째로 큰 국가이며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가 경제 침체를 목격했지만 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까지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 중 하나였다.

인도 성장 스토리의 주요 요인은 인구의 60%가 35세 미만인 젊은 인력, 교육 및 기술 수준 상승 및 인도 정부가 실시한 여러 개발 이니셔티브 등이다. 세계 무역 및 세계화의 맥락에서, 인도는 또한 사업 수행 및 투자 유치 측면에서 더욱 유능해졌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22위)¹⁾, 글로벌 제조 지수(3위)²⁾, 물류 성과 지수(44위)³⁾, 글로벌 혁신 지수(48위)⁴⁾, 세계 경쟁력 지수(43위)⁵⁾, 비즈니스 용이성 지수(63위)⁶⁾와 같은 여러 글로벌 지수에서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월 31일, 인도 재무부 및 기업부 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은 의회에 2019-20년 경제 조사(Economic Survey)를 제출했다. 경제 조사의 주요 하이라이트에 따르면 2024-25년까지 인도를 5조 달러 경제권으로 키우기 위해 부의 창출, 친 기업 정책 촉진, 경제에 대한 신뢰 강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조사를 기반으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일자리 창출'이 국가 부의 창출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는 이제 인도에서의 사업 용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을 바탕으로 MSMEs(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영세중소기업)가 성장하여 더 큰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1) Countries Global Ranking of Start-up Ecosystem, available at : <https://www.startupblink.com/>
2) Reported in Economic Times dated July 16, 2020, available at :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dicators/india-ranks-3rd-in-global-manufacturing-locations-among-48-countries-shows-report/articleshow/77000413.cms?from=mdr>
3) LPI Global Rankings 2018, which is conducted every 2 years, can be accessed at : <https://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2018>
4) Global Innovation Index 2020, available at :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gii_2020.pdf
5) Reported in Economic Times dated June 16, 2020, available at :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dicators/india-ranked-43rd-on-imds-world-competitiveness-index-singapore-on-top/articleshow/76404222.cms>
6) Doing Business 2020 Report by World Bank, available at : <http://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688761571934946384/pdf/Doing-Business-2020-Comparing-Business-Regulation-in-190-Economies.pdf>

인도와 한국은 현재까지 국가간 무역과 투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협정을 체결했다.

- a) 1974년 8월 1일에 체결 및 발효된 인도 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 간 무역협정
- b) 2009년 8월 1일에 체결되어 2010년 1월 1일 발효된 인도와 한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 c) 2017년 발효된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2010년 1월 1일 발효된 CEPA는 양국 관계의 분수령으로 남아 있다. CEPA는 재화와 용역의 무역, 투자, 경쟁 및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양자간 협정이다. 인도와 한국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는 2018년에 양자 무역이 215억 달러에 달하고 최초로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근 몇 년간 추진력을 얻었으며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19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인도와 한국은 양국의 상호 공생 투자와 벤처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2030년까지 양국 무역을 500억 달러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인도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최근 기아 자동차는 약 11억 달러를 투자해 안드라프라데시에 제조 공장을 설립했다. 특히 텔랑가나의 카카티야 메가 텍스타일 파크(KMTP, Kakatiya Mega Textile Park)에 90억 루피 이상을 투자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 한국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 영원무역의 향후 주요 투자가 예상된다. 이 회사는 주로 인도 수출용으로 야외 활동 및 기술 섬유 제품을 위한 편직 및 직조 의류를 생산할 계획이며 12,0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기술 시대의 이러한 무역 증가로 인해 지식재산권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귀중한 상품이 되었으며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국경 간 거래가 크게 증가했는데, 지식재산권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국경을 넘어 보호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관할권의 지식재산권에 제 공되는 보호의 성격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도는 모든 법률과 정책을 알리는 뿌리 깊은 전통, 문화 및 경제 기반을 가진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아시아의 '황금새'로 알려졌던 인도 사회는 지속적으로 '도덕적 권리'를 존중해 왔으며 이러한 도덕적 권리는 인도에서 지식재산권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 1995년 1월 1일 인도는 WTO에 가입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및 WTO의 창립 회원국인 덕분에 인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TRIPS 협정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를 설립한 창립 회원 중 하나였다.

01. 인도의 지식재산권 체제

국제 협약

TRIPS 협약의 서명국은 무엇보다도 WTO명령에 따라 체제를 수립해야 했기 때문에 인도는 의무를 준수하고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필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WTO 가입 후 인도는 WIPO가 관리하는 여러 국제 협약에 서명했다.

- a)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b)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c) 베른협약(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
- d)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e)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f) 집적회로에 대한 지식재산권 조약(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 g) 올림픽심볼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 h)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응한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i) 니스협정/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j)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인도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수년에 걸쳐 발전해 왔으며 인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튼튼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의 발전으로 인해 인도에서 등록되지 않았지만 저명한 국제 상표가 보호를 받아왔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기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어 왔다.

비록 영업 비밀과 노하우가 지금까지 인도에서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법적 개입은 영업 비밀, 노하우 보호, 불법복제 방지 등에 큰 역할을 했다. 인도는 파리 협약의 서명국이기에 때문에 외국 상표 소유자에 대한 사법적 접근 방식도 자유화했다.

요약하면 인도의 지식재산권 체제는 모든 WTO국가의 지식재산권 체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수년에 걸쳐 국제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는 인도의 지식재산권 집행 수준과 지식재산권 관련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 왔다. 지난 수년간 인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식재산권 위반과 관련하여 미국의 우선 감시 대상국⁷⁾에 있는 국가에 관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⁸⁾에 계속해서 인도를 포함시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경제권이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혁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오랜 특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걸쳐있는 미국 기업들은 인도의 협소한 특허 기준뿐만 아니라 강제 실시 및 특허 취소 위협, 그리고 인도에서 라이선스 발급 및 취소를 위한 기준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특허 출원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허 이의 제기 장애물, 특허를 받기 위한 긴 일정 및 과도한 보고 요건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위의 입장은 아마도 특허 체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미국의 관점에서 왜곡될 수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도 인도 시스템(현재 낱자 기준)이 세계 다른 곳에서는 직면할 수 없는 특정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도의 독특하고 다양한 시장 복잡성이 핵심 문제인 만큼, 국제 사회가 인도 시장에 맞게 민감화, 조직화 및 적응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게 계속해서 진화하고 잠재적으로 이익을 내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7)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ustr-puts-india-on-priority-watch-list-on-intellectual-property-concerns/articleshow/69050830.cms?from=mdr>
8)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Special_301_Report.pdf

02.

인도의 지식재산권 체제

인도는 WTO가 정한 시스템에 따라 수립된 새로운 지식재산권 체제의 도입 및 적용에 앞장서 왔다.

인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재 접근방식을 이해하려면 인도 독립 이후 인도의 지식재산권 법이 진화해 온 역사적 기반을 이해해야 한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인도의 인구는 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했으며 인구의 대부분이 빈곤선 아래에 있었다.

인도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 정부는 식량, 연료 자원 및 의약품을 포함한 기본 필수품조차도 서구에서 제조된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인도의 식민지 역사 때문에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부여된 식민지 보호주의를 변경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초기 법률을 개정해야 했다. 따라서 독립 인도에서 급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기 특허 및 디자인 법(Indian Patents and Designs Act, 1911), 상표법(Trade Marks Act, 1940) 및 패턴 및 디자인 보호법(Patterns and Designs Protection Act, 1872)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했다.

따라서 인도는 독립 후 변경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에 관해서 식민지 보호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사회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 인도 정부는 기술 접근성, 지식재산권의 소유자에 대한 제한적 보호, 강제 실시, 가격 규제 및 기타 복지 기반 조항을 허용하는 정책 변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WTO시대 이전 인도의 지식재산권 체제는 다음에 의해 규율되었다.

- 특허법 (Patents Act, 1970)
- 상표법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 패턴 및 디자인 보호법 (Patterns and Designs Protection Act, 1872)
-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57)

앞서 언급한 모든 지식재산권 법령은 인도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앙 법령이었다. 인도는 사회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했고 40년 동안 지켜온 경제적 고립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다. 인도를 '혁신 기반 사회'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도 경제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도는 비동맹 국가 및 개발도상국 그룹을 이끌면서 1994년 GATT로 이어진 협상의 최전선에 있었다. WTO 가입 후, 인도는 개정 특허법 Patents (Amendment) Act, 1999,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디자인법(Designs Act, 2000),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반도체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법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Act, 2000), 식물 및 품종 보호 및 농민 권리법(Protection of Plants &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 2001), 생물 다양성 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을 입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체제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개요

인도 법률은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저작권 등을 보호한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체제는 TRIPS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적, 사법적 및 행정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식재산권 체제가 시작된 시점부터 인도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인도정부는 산업, 대학, 학교 등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유형과 그 보호를 열거하는 여러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2016)이 승인되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여러 부문 전반에 걸쳐 혁신과 창의성을 자극하고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진흥관리 셀(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 이하 'CIPAM')는 2019년 1월에 산업 및 내부 무역 진흥부(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이하 'DPIIT')로 개명되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보장하고 이 정책의 목표를 다루는 산업 정책 및 진흥부('DIPP')의 후속 전문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CIPAM은 지식재산권 인식, 상업화 및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지식재산권 절차의 단순화 및 능률화를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2016년에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보호 촉진 계획(A Scheme for Facilitating 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이하 'SIPP')이 시작되었으며 2023년 3월까지 연장되었다. 이 제도는 특허(및 디자인, 상표 관리)청(The office of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이하 'CGPDTM')에 의해 구현되었으며 특허,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출원 및 처리를 위해 스타트업을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s)를 지원한다. 퍼실리테이터에게 지불하는 전문 비용은 지식재산권 제도에 따른 조항에 따라 CGPDTM에서 상환한다.

인도의 지식재산권에 적용되는 현행법

인도의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 a)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replaced 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이하 '상표법')(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대체)
- b)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 이하 '저작권법')(이제는 어문저작물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됨)
- c) 특허법(The Patent Act, 1970, 이하 '특허법')(1999년, 2002년 및 2005년 개정법에 의해 개정된 특허법)
- d) 디자인법, 2000(The Designs Act, 2000, 이하 '디자인법')(Designs Act, 1911 대체)
- e)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이하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
- f) 반도체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법, 2000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s Act, 2000)
- g) 식물, 품종 및 농민 권리 보호법, (The Protection of Plants and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 2001)
- h) 생물 다양성 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인도의 지식재산권 사무소

인도에서 상표, 특허 및 디자인은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관리한다. 한편 저작권 또한 상공부에서 관리한다. 특허, 디자인 및 상표사무소는 DPIIT의 하위기관이다. CGPDTM은 특허법, 상표법,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 및 디자인법의 작업을 관리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한다. CGPDTM 사무실은 뭄바이에 있다. 특허 사무소의 본부는 콜카타에 있으며 지점은 첸나이, 뉴델리, 뭄바이에 있다. 상표 등록 사무소는 뭄바이에 있으며 지점은 콜카타, 첸나이, 아메다바드, 뉴델리에 있다. 디자인사무소는 특허청이 있는 콜카타에 있다. 지식재산권의 신청은 출원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결정한 관할권에 따라야 한다. 전국의 모든 저작권 관련 신청서 작성에 대한 관할권을 확장하는 저작권 등록 사무소는 델리에 있다.

인도 지식재산권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권

특허(및 디자인, 상표 관리)청(CGPDTM)	
위치 및 관할권	주소
뭄바이	Boudhik Sampada Bhawan, CP-2 Sector V, Salt Lake City, Kolkata-700091

특허사무소 및 디자인사무소(Patent and Designs Office)	
콜카타 (본부) [관할권: 아래에 언급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로 확장된다]	Boudhik Sampada Bhawan, CP-2 Sector V, Salt Lake City, Kolkata-700091
델리 [관할권: 하리아나, 히마찰프라데시, 펀자브, 라자스탄,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라칸드, 델리, 찬디가르, 잠무, 카슈미르, 라다크의 연방 직할령]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uilding, Plot No. 32, Sector 14, Dwarka, New Delhi-110078
첸나이 [관할권: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케랄라, 타밀나두, 텔랑가나, 풍디체리 및 락샤드위프의 연방 직할령]	Boudhik Sampada Bhawan, G.S.T. Road, Guindy, Chennai-600032
뭄바이 [관할권: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마디야 프라데시, 고아 및 차티스가르, 다만과 디우 & 다드라와 나가르 하벨리의 연방 직할령]	Boudhik Sampada Bhawan, Antop Hill, S.M. Road, Mumbai - 400 037

02.
인도의
지식재산권 체제

상표 등록 사무소(Trade Marks Registry)	
뭄바이 (본부) [관할권: 마하라슈트라, 마디아프라데시, 차티스가르 및 고아]	Boudhik Sampada Bhawan, S.M.Road, Antop Hill, Mumbai-400 037
델리 [관할권: 잠무 & 카슈미르, 펀자브, 하리아나, 우타르프라데시, 히마찰 프라데시, 우타라칸드, 델리 및 찬디가르의 연방 직할령]	BoudhikSampada Bhawan, Plot No. 32, Sector 14, Dwarka, New Delhi-110078
콜카타 [관할권: 아루나찰 프라데시, 아삼, 비하르, 오리사, 서 벵골, 마니푸르, 미조람, 메갈라야, 시킴, 트리푸라, 자르칸드 및 나가랜드,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연방 직할령]	7th Floor, NizamPalace, 234, A.J.C. Bose Road, Kolkata - 700 020
첸나이 [관할권: 안드라프라데시, 텔랑가나, 케랄라, 타밀 나두, 카르나타카, 폰디체리와 락샤드위프 섬의 연방 직할령]	Anna Salai, Guindy Industrial Estate, SIDCO Industrial Estate, Guindy, Chennai, Tamil Nadua 600032
아마다바드 [관할권: 구자라트 및 라자스탄과 다만, 디우, 다드라 및 나가르 하벨리의 연방 직할령]	Boudhik Sampada Bhawan, Near Chanakyapuri overbridge, BesidesAMC City, Civic Centre, Ghatlodiya, Chanakyapuri, Ahmedabad, Gujarat380061

저작권 등록 사무소(Copyright Registry)	
델리 [관할권: 인도 전역]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Trad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Boudhik Sampada Bhawan, Plot No. 32,Sector 14, Dwarka, New Delhi-110078

저작권, 상표, 디자인 및 특허는 모두 산업 자산의 일부이다. 사업의 용이성을 위한 단계로서 인도 정부는 지식재산권 신청 접수, 모든 지식재산권 신청의 실시간 상태 획득, 보조금 확인, 지식재산권 등록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한 포괄적인 e-게이트웨이(e-gateway) 시설을 도입했다.

03.

인도의 위조품 시장

서론

사칭통용, 불법복제와 같은 모든 유사한 표현과 함께 위조 및 불법복제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포함된다. 위조 및 불법복제는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문제로 떠올랐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자금세탁, 위조문서, 위조 화폐 등과 관련된 위조의 범위는 액세서리, 의류, 음악, 소프트웨어 및 기술, 약품, 담배 및 주류, 자동차 부품, 소비재, 특히 일용소비재(Fast-moving consumer goods, 이하 'FMCG'), 장난감과 전자 제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장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위조품의 대규모 침투는 이제 전 세계 무역의 3.3%에 해당하며⁹⁾ 국가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에게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잠재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비즈니스 조치(Business Action to Stop Counterfeiting and Piracy(이하 'BASCAP') 및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이하 'ITA')¹⁰⁾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위조 및 불법복제의 총 세계 경제 규모는 2022년까지 2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 상공회의소(The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ies, 이하 'FICCI')하에 있는 밀수 및 위조 행위 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Smuggling and Counterfeiting Activities, 이하 'FICCI CASCADE')의 최근 보고서¹¹⁾에 따르면 위조 및 불법복제 제품의 국제적인 경제적 가치는 2015년 한 해에만 이미 1조 5천억 달러에 도달했다.

인도 역시 예외가 아니며, 국가 내 광범위한 위조 및 불법복제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건강 및 안전 문제를 겪고 있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위조에 관한 위협에 더욱 취약하다.

인구 통계 :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인도 내 인구의 대부분은 30세 미만이며 이들이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한다. 인도 인구의 상당수가 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노동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강력한 소비자 구매 계층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성 : 인구가 많은 대국이라는 점 외에도 인도는 다양한 물리적 특징과 문화적 패턴을 보여준다. 인도의 인구는 모든 주요 종교를 망라하는 29개 주와 7개 연방 직할령에 퍼져있어 대중의 다양성을 더욱 강화한다. 문화적, 영토적 차이로 인해 인도에는 지역마다 선택과 요구가 다른 다양한 소비자가 있다. 더욱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제품부터 고가의 고급 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범주의 제품에 대한 적절한 수요를 창출한다.

제한적인 시장에서 공개 시장으로의 전환 : 1991년까지 인도는 폐쇄된 경제를 지속하고 있었고 외국 물품의 반입은 제한적이었다. 지속적인 개혁과 관료적 처리의 단순화를 바탕으로 인도는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 브랜드의 진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시장에 출시된 모든 새롭고 독특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요는 엄청나다.

9) Press release by Authentication Solution Providers' Association ('ASPA') - July, 2020

10) Available at: <https://www.iccwbo.be/wp-content/uploads/2017/02/ICC-BASCAP-INTA-2016-report.pdf>

11) Emerging Challenges to Legitimate Businesses in the Borderless World, available at: https://www.ficciscascade.in/wp-content/uploads/2018/07/FICCI-CASCADE-GT-ReportEmerging_Challenges_Report_illlicit-trade-1-1.pdf

인도 위조품 시장의 배경

위조품의 낮은 가격 요소야말로 그러한 위조품 또는 패스 오프(Pass-offs)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가장 큰 동력이다. 인도 시장이 여러 중소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위조 제품이 이러한 지역 시장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인도의 위조품 시장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인도에서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 상품의 충분한 가용성 부족
- 사람들의 높은 수요
- 높은 수요 외에도 사람들은 또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요구함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인도에서 위조품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위조품을 넘겨주고 빠르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위조자들에게 현혹된다.

위조에 대한 이해

법적 정의

국제위조방지연맹(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이하 'IACC')에 따르면, 위조품의 기본 정의는 정당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위조의 개념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률, 인도 형법(Indian Penal Code, 1860), 관세법(Customs Act, 1962) 및 기타 특정 부문별 법률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인도 형법 28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조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위조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법률은 위조 상품 또는 불법복제 상품을 정의하지 않지만 인도가 서명한 TRIPS 협약은 51조에 따라 위조 상표 상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 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위조 상표 상품"이란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승인 없이 포함되고 상표와 본질적인 면에서 구별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포장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의미한다.

b) "불법복제 저작물"은 해당 사본의 제작이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과 저작권자 또는 제작국의 권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동의없이 복제된 모든 상품을 의미한다.

용어

'위조(Counterfeiting)'라는 용어는 상표권 침해 사례만을 의미하는 반면 불법복제(Piracy)이라는 용어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은 종종 서로 겹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위조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품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불법복제는 일반적으로 음악,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한 제품의 동일한 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이 핸드북에서 '위조'라는 용어는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다른 제품의 외관을 매우 비슷하게 모방하여 소비자가 다른 제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드는 제품의 제조를 포괄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저작권 침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개념에는 상품의 포장, 라벨링 또는 상품의 기타 중요한 기능의 복제 등이 포함된다.

위조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조 제품의 유통 업체와 거래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도에서 위조 문제의 규모

본 핸드북은 위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인용하였다. 다만 정확한 통계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중 소수만이 실질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용 가능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인도는 위조와 불법복제가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위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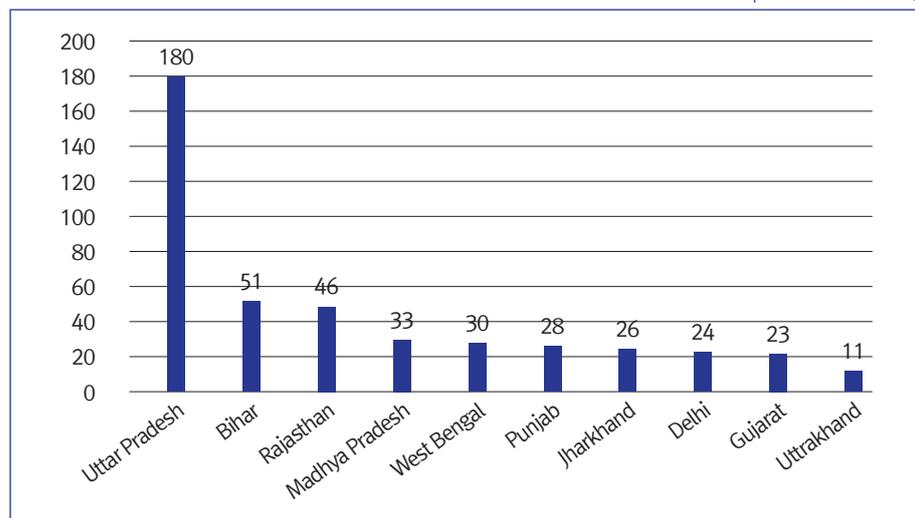
위조 방지 및 추적성 솔루션 제공 업체의 자체 규제 산업 기관인 인증 솔루션 제공 업체 협회(The Authentication Solution Providers' Association, 이하 'ASPA') 보고서인 '인도의 위조 현황 2020'(The State of Counterfeiting in India 2020, '위조 보고서 2020'¹²⁾에 따르면, 위조 사건의 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24% 가량 가파르게 증가하여 인도 경제에 매년 1조 루피 이상의 손실을 가져왔다. 물론, 아동 노동, 자금세탁, 심지어 인신매매와 같은 폐해도 위조 산업과 관련이 있다. 2019년에 관련 당국이 현지 시장에 공급 및 유통된 위조품을 현장단속을 진행한 사건이 언론에 약 572 건 보도되었다. 보고된 내용 중 위조 사례가 가장 많은 상위 부문은 다음과 같다.

통화, FMCG, 주류, 제약, 문서, 농업, 사회기반시설, 자동차, 담배 및 의류 등이다.

통화, 주류 및 FMCG는 지난 2년 동안 위조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부문이다. 이 중 FMCG는 가장 취약한 분야로 2018년의 79건에서, 2019년 129건까지 해당 부문의 위조 사건이 63% 증가하였다.

위조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고급 명품 브랜드의 평판과 영업권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커민 씨, 거자 식용유, 버터, 헤어 오일, 비누, 유아용, 백신 및 의약품을 포함한 일상용품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일상 품목에서도 점점 더 많은 위조 행위가 보고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COVID-19 위기조차도 위조자들의 주요 기회로 악용되어 왔다. 범죄자들이 개인위생 제품에 대한 높은 시장 수요를 이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위조 개인 방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이하 'PPE')키트, 소독제 및 마스크의 공급 및 유통 매체를 통해 150개 이상의 사례가 보도되어 의료 전문가, 보안 자원 봉사자 및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Top 10 locations in Year 2019



13)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웨스트 벵골, 펀자브, 자르칸드, 델리, 구자라트, 우타라칸드 등과 같은 주들은 위조 방지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상위 10대 주이며 우타르프라데시주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고 비하르, 라자스탄 및 이들 3개 주가 지난 2년 동안 인도에서 보고된 총 위조 사건의 거의 45%를 차지한다.

12) https://www.aspaglobal.com/pre_upload/nation/1596346415-aa5b4e96d33c56e98087d521a2ae56ad-202007-The-State-of-Counterfeiting-in-India.pdf

13) Report of ASPA : TheState of Counterfeiting in India 2020, available at:

https://www.aspaglobal.com/pre_upload/nation/1596346415-aa5b4e96d33c56e98087d521a2ae56ad-202007-The-State-of-Counterfeiting-in-India.pdf

인도에서 발생하는 위조의 형태

기술의 발전과 국경 없는 무역의 개방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 위조품에 오리지널 포장을 적용하여 복제

위조자들이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짜 제품에 정품 또는 원래 포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정품과 진품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2. 불량품을 처분하지 않고 재판매

잘 알려진 브랜드의 아울렛은 대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사소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종종 높은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한다. 이 경우 고객은 제품의 결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러한 큰 폭의 할인율은 고객이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한다.

3.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포장과 라벨 사용 (예: 팀버랜드 셔츠)



4. 불순물 첨가

이 방법의 경우 제품은 오리지널이지만 일부 불순물이 첨가되어 희석된 경우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음식과 음료에 사용된다. 예로, 잘 알려진 브랜드의 우유팩에 물을 첨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

5. 폼하/희석

판매 목적으로 인기 브랜드의 상표를 위조 제품에 붙여 넣는 행위이다. 인도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유사한 상표 사례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6. 기만적으로 유사한 포장 및 라벨 사용

(예: Louis Vuitton(루이비통 'LV') 대신 NB)



7. 기타 일반적인 방법

- a) 밀수품(Contraband) - 세관에서의 신고 시의 관세 및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범죄자들은 종종 상품을 숨겨 밀수하려 한다.
- b) 재라벨링 / 재분류(Re-labelling/Reclassification) - 세금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범죄자들은 종종 고관세 제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한다. 경우에 따라 어떤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원산지를 변경하기도 한다.
- c) 단기 착륙 운송 상품(Short-landing transit Goods) - 경우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운송 상품 또는 보세 수입품(Bonded imports)의 회색채널(Grey channel)로의 누출이 발생한다.
- d) 위조, 변조(Falsification) - 상품과 관련된 문서를 조작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 e) 위조 제품과 정품 혼합
- f) 위조 제품을 수입하여 오리지널 제품으로 사칭하여 거래
- g) 브랜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위조 상표를 추가

위조의 주요 영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불리한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1. 기업가, 투자자 및 제조업체의 경우

- a) 혁신과 창의성이 훼손됨
- b) 브랜드 가치 및 영업권 손상
- c) 기업의 매출 및 이익 감소
- d)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집행을 위한 소송비용
- e) 투자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인센티브 감소

2. 국민 경제, 안보, 복지의 경우

- a) 탈세로 인한 수익 손실
- b) 일자리 상실
- c) 저임금,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근무 조건으로 인한 근로자 착취
- d) 여성 착취, 아동 노동 및 불법 이주 노동자
- e)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f) 범죄자, 테러리스트 및 부패 확산
- g)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 h)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외 무역 구조와 규모가 악화될 수 있음
- i) 위조 방지 작업에 소요되는 고비용

3. 소비자 /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의 경우

- a) 건강 및 안전 위험에 대한 쉽게 노출됨
- b) 저품질로 인하여 소비자 효용이 낮아짐
- c) 매우 낮은 품질로 인한 금전의 전체 또는 부분적 손실

인도의 주요 위조품 시장

- a) 펀자브 구 루디아나 차우라 바자르(Chaura Bazar, Old Ludhiana, Punjab / 주로 의류)
- b) 뭄바이 히라 판나 쇼핑센터(Heera Panna Shopping Centre, Mumbai / 의류, 향수, 시계, 가죽 제품 및 수입 담배)
- c) 델리 카슈미르 게이트(Kashmiri Gate, Delhi / 4륜차의 자동차 예비 부품 및 스피커, 타이어 및 튜브와 같은 자동차 액세서리)
- d) 웨스트 벵갈사우스 24 파가나스 지구(South 24 Parganas District, West Bengal / 유명 음료 브랜드의 공병)
- e) 비하르 파트나 고빈드 미트라 로드(Govind Mitra Road, Patna, Bihar / 캡슐, 정제, 주사제, 분말 및 시럽과 같은 의약품)
- f) 우타르 프라데시 아그라 만톨라 분수 시장(Fountain Market, Mantola, Agra, UP / 수술기구, 캡슐, 정제, 주사제, 분말 및 시럽과 같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 g) 카르나타카 사다르 파트라파 로드(Sadar Patrapa Road, Karnataka / 스피커, 블루투스 장치, TV 리모컨, 컴퓨터 코드, 가전 제품, 전구, 튜브 조명 및 LED)
- h) 타밀나두 리치 스트리트 안나 살라이 (Anna Salai, Ritchie Street, Tamil Nadu / 휴대폰, 휴대폰 액세서리, 컴퓨터 및 컴퓨터 액세서리와 같은 전자 제품)
- i) 델리 팔리카 바자르(Palika Bazaar, Delhi / 불법복제 미디어 디스크, 의류, 전자 제품)
- j) 첸나이 버마바자르(Burma Bazaar, Chennai / 불법복제 미디어 디스크, 가죽 제품, 전자 제품)
- k) 델리 네루 플레이스(Nehru Place, Delhi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부품, 컴퓨터 액세서리, 키보드, 마우스)
- l) 델리 사다르 바자르(Sadar Bazaar, Delhi / 의류, 액세서리, FMCG)
- m) 델리 간디 나가르(Gandhi Nagar, Delhi / 의류, 의복, 청바지)
- n) 델리 카롤 바그 (Karol Bagh, Delhi/ 이륜차의 예비 부품 액세서리)

04.

인도에서 위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

위조의 경제 및 소비자의 결과는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 소유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서 느껴진다. 인도에서 위조는 이제 인도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전 장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FMCG(일용소비재), 포장 식품, 개인 용품, 휴대폰, 주류, 생수, 의약품 등에서 위조품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산업과 정부에 수십억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 핸드북에서는 위조가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각각의 경우, 위조가 판매 감소, 수익 감소, 브랜드 가치, 평판 손상, 소비자 불신 등의 측면에서 원래 권리 보유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동차 부품 및 예비 부품

업계의 주요 업체

인도 기업	다국적 기업
a. 타타 자동차 Tata Motors Limited	a. 혼다 자동차 회사 (일본) Honda Motor Company Ltd (Japan)
b.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Mahindra & Mahindra Limited	b. 현대 자동차 (한국) Hyundai Motor Company (South Korea)
	c. 기아 자동차 (한국) KIA Motors Corporation (South Korea)
c. 마루티 스즈키 인디아 Maruti Suzuki India Limited	d. 도요타 자동차 (일본) Toyota Motor Corporation (Japan)

인도 자동차 산업은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와 이로 인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막대한 투자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전례 없는 성장을 목격했다. 인도는 2021년까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승용차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는 애프터 마켓(제2차 시장)의 다양한 자동차 부품이 대규모로 위조되고 있다.

원래 제조업체 부문은 위조로부터 안전하지만 자동차 애프터 마켓은 종종 불법적인 활동의 대상이 된다. 이 시장 부문은 자동차 수리 및 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 부품 및 액세서리의 제조, 유통 및 소매를 수반한다. 복제품은 저렴한 비용과 시각적 유사성 때문에 애프터 세일 시장에서 자주 사용된다. 제조업체가 부품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합법적인 부품의 생산 초과부분이 회색 시장으로 이동하여 위조, 재활용 또는 장물과 함께 판매된다.

ASPA와 자동차 부품 제조협회(The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ACMA')에서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위조 자동차 부품은 소매점 부품의 전체 애프터 마켓에서 30~40% 이상을 차지하여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고소비 구동 부품 또는 기술 투입이 적은 부품이 가장 일반적으로 복제된다. 여기에는 클러치 부품, 오일, 연료 필터, 벨트, 호스, 볼 조인트, 스피, 라이너, 브레이크 패드와 같은 서스펜션 품목, 기어 부품, 싱크로콘, 개스킷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위조 포장, 라벨 및 기타 빨리 순환되는 다양한 부품이 제조되어 시장에 배포되었다.

위조품은 차량 안전장치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도로 사고로 이어진다. 인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위조 자동차 부품 사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델리 카슈미르 게이트(Kashmere Gate, Delhi)는 인도에서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의 주요 위조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색시장은 현지 및 수입 주도 시장으로 대부분의 위조 자동차 부품이 중국에서 들어온다. 이에 따라 OEM 업체들은 위조부품을 취급하는 상인 및 제조업체를 상대로 이러한 집회에 대하여 활발히 대응하고 있다.

04.
인도에서
위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

휴대 전화

업계의 주요 업체

회사	국가
삼성 Samsung	한국
애플 Apple	중국
샤오미 Xiaomi	중국
비보 Vivo	중국
오포 Oppo	중국

시장 조사 기관인 테크ARC(Tech ARC)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현재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5억 2백2십만 명으로, 이는 인도인의 77% 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 광대역에 액세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⁴⁾

인도에서는 휴대폰 위조가 자주 발생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위조품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고의로 저가의 위조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많다.

위조 휴대폰의 확산은 기술의 품질 저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건강과 개인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 위조 배터리의 합선이나 과열로 인해 폭발이 발생했으며 위조 휴대폰은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된 FICCI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판매된 휴대 전화의 약 21%가 무단 또는 위조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델리 가파르 시장(Gaffar Market, Delhi)은 인도에서 휴대폰 및 충전기, 스피커, 마이크, 보조배터리 등과 같은 액세서리의 위조 허브로 간주된다. VII 장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종종 현장 단속하여 1크로어(천만 루피) 상당의 제품을 압수했다.

14) Report cited at the given
link : <https://www.news18.com/news/tech/smartphone-users-in-india-crossed-500-million-in-2019-states-report-2479529.html>

소프트웨어

업계의 주요 업체

인도 기업	다국적 기업
a. 인포시스 Infosys	a. 마이크로 소프트(USA) Microsoft Corporation(USA)
b. 타타 컨설턴시서비스 Tata Consultancy Services	
c. 테크 마힌드라 Tech Mahindra	
d. 위프로 WIPRO	b. 오라클(USA) Oracle Corporation(USA)
e. HCL 테크놀로지 HCL Technologies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 CD를 구입하거나 노점의 공급업체로부터 휴대용 저장장치에 다운로드하는 것은 인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적절한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사, 배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소프트웨어 불법복제라고도 함)는 중국에 이어 인도에서 매년 업계에 막대한 수익 손실을 초래한다.

불법복제의 문제는 대부분 표준 형식으로 작성되고 대량 생산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작성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정보 기술(이하 'IT')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경제를 뒤흔들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유형은 아래와 같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Counterfeit Software) : 합법적인 원본 소프트웨어와 함께 판매되는 모든 동봉된 설명서와 함께 CD 또는 DVD상의 상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사 및 배포

OEM 번들 해제(OEM Unbundling) : OEM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원래 OEM 또는 소매 판매 수준에서 번들로 제공되는 하드웨어와 분리될 때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유형

사용자 단순 복제(Soft Lifting) : 사용자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협정에 의한 액세스 권한을 받지 않은 다른 사용자와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때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유형

하드 디스크 탑재(Hard Disk Loading) : 하드웨어 공급업체, 즉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 공급업체가 컴퓨터 시스템에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본을 설치한다할 때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소프트웨어 설명서나 원본 CD를 받지 못하지만 하드웨어 딜러는 전체 시스템 구매 가격에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Corporate Software Piracy) : 기업이 대량 구매 계약을 통해 취득한 소프트웨어 설치 건수를 적게 보고하는 불법복제 유형

인터넷 소프트웨어 불법복제(Internet Software Piracy) : 인터넷 채널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 대개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을 통하여 무료로 또는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한 사용자와 교환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적/불법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종종 주요 기능, 문서 및 업그레이드 옵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신뢰할 수 없으며 버그와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위조 소프트웨어의 불법 판매로 인한 손실로 인해 주요 IT 회사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04. 인도에서 위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

컴퓨터 하드웨어

인도에서는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이 기업과 개인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동시에, 경제성의 문제와 위조 제품 사용의 위험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저가의 위조 컴퓨터 부품에 대한 수요와 가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회색시장 및 위조품 감소 연합('AGMA')에서 실시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인도에서 이러한 회색시장의 규모는 거대하며 수명이 다한 제품을 원본으로 리브랜딩하고 리퍼비시(Refurbish)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에서는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및 관련 부품이 모두 회색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델리 네루 플레이스(Nehru Place, Delhi) - 인도에서 가장 큰 IT 허브인 네루 플레이스는 불법복제 및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시장은 소프트웨어, 모니터, 키보드, 프린터, 마우스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포함한 불법복제 및 위조 제품을 취급하며 이로 인해 미국 무역 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가 작성한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 List)'에 포함되었다.

제약

인도는 세계적인 제약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제네릭 의약품 공급자로, 전 세계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신에 대한 전 세계 수요의 62%를 공급하고 있다. 인도는 생산량 기준 세계 3위, 가치 기준 14위이다.

위조 의약품은 정체 또는 출처와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부정하게 라벨링된 의약품이다. 위조는 브랜드 제품과 제네릭 제품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위조 제품에는 잘못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 유효 성분이 없는 제품, 핵심성분이 누락된 제품, 유효성분이 부족한 제품, 부적절하게 라벨링된 제품, 가짜 포장으로 저장 또는 취급되는 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조제품은 더 이상 라이프 스타일 약품(일상생활에 만족감 주는 약, 예 : 비아그라)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침 시럽, 진통제, 심지어 비타민 보충제와 같은 필수 약품도 포함된다. 현지 시장에서 대부분의 위조 및 가짜 약물 사례는 비하르, 웨스트 벵골, 우타르 프라데시와 구자라트에서 발견되었다.

세계 보건기구(이하 'WHO')는 위조 의약품, 즉 표준미달, 가짜, 허위 라벨, 변조 및 위조(The standard, spurious, falsely labelled, falsified and counterfeit, 'SSFFC') 의약품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의약품 및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에 따라 품질이 낮은 의약품은 a) 부정표시, b) 가짜 또는 c) 불량 의약품으로 구분되며 각각 17, 17A 및 17B 항에 정의되어 있다.

인도 뉴 델리 '**바기라스 팰리스' 찬드니 초크('Bhagirath palace Chandni Chowk', New Delhi)**는 인도 내 위조 및 가짜 약품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FMCG(일용소비재)

업계의 주요 업체

인도 기업	다국적 기업
a. 힌두스탄 유니레버 Hindustan Unilever Limited	a. LG 전자 (한국) LG Electronics Inc.(South Korea)
b. ITC ITC Limited	
c. 브리타니아 인더스트리즈 Britannia Industries Limited	b. 레킷 벤키저 그룹 (영국) Reckitt Benckiser Group (United Kingdom)
d. 고드레즈 컨슈머 프로덕츠 Godrej Consumer Products Limited	

FMCG는 회전율이 빠르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누, 세제, 화장품 및 기타 세면 용품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필수 및 비필수 품목을 말한다. 인도의 FMCG 시장은 상당한 수준의 비브랜드 및 비포장 제품이 존재하는 등 세분화되고 조직화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FMCG 위조자는 이와 같이 조직화되지 않은 시장을 이용하고 고급 포장기술을 사용하여 정품을 모방하고 정품을 질이 낮은 제품으로 대체한다. 또는 위조자들은 때때로 정품과 비슷하게 들리는 브랜드를 사칭하기도 한다.

포장 식품 부문은 위조에 가장 취약하다. 비표준 또는 저품질 식품을 섭취하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거나 생명이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 영역에서의 위조는 특히 위험하다.

위조는 또한 손비누, 손소독제 및 PPE 키트 등, COVID-19 관련 제품에도 침투했다. 공황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조 및 가짜 제품을 기만적인 브랜드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15) <https://www.mondaq.com/india/healthcare/968250/copycat-covid-products--new-face-of-counterfeit>

04.
인도에서
위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

미디어 불법복제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의 현지 사무소인 영화 배급사 협회(Motion Picture Distributors' Association, 'MPDA')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영화 다운로드이다. 영화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도 웹 오리지널로 확대되었다.

2019년 8월, 메신저앱, 텔레그램과 인터넷의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넷플릭스(Netflix)의 범죄 스릴러 '신성한 게임(Sacred Games)'의 두 번째 시즌의 불법복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헝가리 마디지털미디어(Hungama Digital Media) 오리지널인 데미지드(Damaged)는 2018년 6월 첫 공개 이후 다양한 토렌트 웹 사이트에서 169,000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20년 3월 COVID-19로 인해 부과된 봉쇄 기간 동안 더욱 증가했다.

디지털 플랫폼 보안,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글로벌 솔루션 제공 업체인 어데토(Irdet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불법복제로 인해 연간 28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P2P 다운로드 상위 5개국 중 하나이다.

맞춤형 브랜드 및 상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인비저널(Envisional Ltd)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인은 인도 콘텐츠 중심 토렌트 사이트 방문자의 가장 큰 그룹이며 또한 미니노바(Minivova), 토렌츠(Torrentz) 및 더 파이러트 베이(The Pirate Bay)와 같은 주요 국제 비트 토렌트 사이트를 방문하는 최대 또는 두 번째로 큰 그룹을 구성하며 인도의 영화 및 TV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불법복제는 주로 사이버 락커(Cyber lockers) 또는 레이드라피드쉐어(RapidShare) 또는 핫파일(HotFile)과 같은 웹 기반 파일 호스트와 비트 토렌트(BitTorrent) 같은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비디오 스트리밍 웹 사이트는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았다.

멀티플렉스 및 극장에서의 영화 개봉 당일 불법 촬영은 기존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이와 같은 불법복제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는 가장 인기있는 소스 중 하나로, 이러한 웹사이트의 대부분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복제된 음악, 게임 또는 영화를 얻기 위하여 도메인에 액세스하는 사용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불법복제 영화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더 'YTS' 도메인(The 'YTS' domains)
- 더 파이러트 베이(The Pirate Bay)
- 토렌츠2(Torrentz2)

16)

델리 경찰은 상점 주인이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나 게임 CD의 해적판을 제공했던 **델리의 팔리카 바자르 (Palika Bazaar, Delhi)** 지역을 여러 차례 현장단속했다.

16) CIPAM에 의한 경찰용 지식재산권 단속 툴킷(IP Enforcement Toolkit for Police by CIPAM, available at): <http://cipam.gov.in/wp-content/uploads/2019/11/Toolkit-CIPAM.pdf>

05. 인도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 및 유형

소유자의 허가 또는 동의 없는 지식재산권의 위반 또는 침해행위는 인도에서 침해(Infringement)로 간주된다. 인도에서는 상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를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기 쉬우며 아래와 같은 여러 형태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상표권 침해

등록상표의 침해

허가받지 않은 자(즉, 등록된 소유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소유자가 허용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가 거래 과정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사한 다른 상표를 사용할 경우 등록상표가 침해되었다고 한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무단 사용은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중은 다른 등록상표와 연관이 있다고 믿게 된다. 상표법29조는 상표 침해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의 주요 요소

- 등록상표 사용
-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
- 등록된 소유자의 허가 및 라이선스 없음
- 상표가 등록된 재화 또는 용역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등록상표의 희석

인도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해당 등록상표가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과 유사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을 등록상표의 희석(Dilution)이라고 한다. 상표법29 (4) 절에서는 상표 희석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상표 희석의 주요 요소

- 등록상표가 인도에서 명성을 얻고 있음
-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사용
- 등록된 소유자의 허가 및 라이선스 없이
- 상표가 등록된 재화 또는 용역과 유사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미등록상표의 사칭통용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침해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미등록상표에 관한 보호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미등록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미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사칭통용'(Passing off)이라는 관습법에 따라 그러한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사칭통용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의 한 형태이다.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사칭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얻은 평판, 영업권 및 인식에 대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등록상표 사칭통용의 주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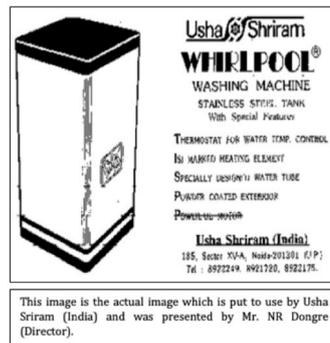
- 미등록상표
- 해당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사용
- 허가 및 라이선스 없음
- 재화와 용역을 다른 사람의 재화와 용역으로 사칭하여 통용하려는 의도로 거래하는 경우

05.
인도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 및 유형

주지상표의 국경 간 평판

상표법의 개정된 조항은 인도의 ‘주지상표’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수단을 제공한다. 동법에 따르면 주지상표는 많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Well-known) 상표이므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러한 주지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주지 표장을 달고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연결로 간주될 수 있다. 주지상표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인정, 평판 및 영업권을 가진 상표이다. 따라서 상표가 인도에서 등록되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대중에게 잘 알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실제로 인도 법원은 이 원칙과 인도의 주지상표에 부여된 보호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월풀 v. N.R. 동그레(Whirlpool Co.&Anr.v.N.R. Dongre)¹⁷⁾ 사건에서 델리고등법원은 ‘월풀(Whirlpool)’이 세탁기와 관련한 주지상표이므로 인도 제조업체가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른 유사한 경우, 상표 ‘벤츠(Benz)’가 자동차와 관련하여 주지상표로 간주되었고 ‘롤렉스(Rolex)’ 표장은 시계와 관련하여 주지상표로 간주되었다. 인도에서 주지상표로 인정된 예시는 다음과 같다.



This image is the actual image which is put to use by Usha Shriram (India) and was presented by Mr. NR Dongre (Director).



18)

17) Whirlpool Co. &Anr. v. N.R.Dongre 1996 (16) PTC 415 (Del)
 18) 현재 다양한 판결을 통해 주지상표로 분류된 약 97 개의 상표가 있으며 목록은 <https://ipindiaonline.gov.in/tmrpublicsearch/wellknownmarks.aspx>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의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등록 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용자가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지만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법의 규정에 따라 침해 사본(즉, 영화 촬영 필름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어문,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저작물의 복제)을 인도로 수입하는 것은 수입업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저작물이 원본 형식으로 사용 / 복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복제된 경우 이러한 복제 역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도 있다. RG 아난드 v. 디렉스 필름(RG Anand v. Delux Films(1978)) 사건의 경우¹⁹⁾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고소장을 복사해서 영화로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저작물을 열람하였을 경우에 피고의 저작물이 명백히 원고의 저작물을 고쳐 쓴 것으로 보여야 하거나 또는 원본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의 사본, 표절 혐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 표현만을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아직 ‘저작물’로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경우 법령에 의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주요요소

- 개인의 저작권 무단 사용
- 허가 및 라이선스 없이 사용
- 허가 및 라이선스를 위반한 경우

디자인 침해

디자인법에 따르면 등록된 디자인의 불법복제는 디자인의 침해로 간주된다. 등록된 디자인 소유자의 허가 또는 라이선스 없이 등록된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그 물품의 거래를 위해 모방하는 자는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수입물품에 등록된 디자인이 적용되거나 그 위조품이 포함되면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반입이 위법하다고 디자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체가 불법에 해당하게 된다. 사실상,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 또는 그 모방이 불법적으로 적용된 물품을 게시하거나 노출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요요소

- 등록된 디자인의 무단 적용 또는 물품 모방
- 디자인(또는 모방)이 적용된 물품의 거래 사용

특허 침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 침해에 해당하며 특허법에 따라 금지된다.

법에 따른 보호는 완전명세서가 공개된 날부터 시작되며 특허 기간 동안 유효하다. 특허권 부여 기간에 발생한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요요소

- 특허 발명의 무단 사용
- 실질적(직접 침해) 또는 경미 및 우발적 (간접 침해)

19) RG Anand v Delux Films AIR 1978 SC 1613

06.

인도 위조상품 대응 방안

위조 및 불법복제는 인도 시장 내 인도 및 다국적 기업 모두의 주요 관심사이다. ‘위조’ 및 ‘표절’은 지식재산권 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불법 활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 ‘침해’의 정의 및 법적 개념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WTO, WIPO와 같은 국제기구는 상표, 저작권, 특허, 디자인권 및 다수의 관련 권리와 관련하여 TRIPS 협정에 명시된 지식재산권 침해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경제 전반의 위조와 불법복제는 경제 성장의 핵심인 혁신을 저해한다. 위조와 불법복제의 규모와 영향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 및 소비자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도 경제는 광범위한 위조, 불법복제 및 밀수로 인해 경제, 재정 및 안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의 또는 무의식적으로 ‘위조 및 불법복제’를 조장하는데 관여하게 되었으며 인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었다.

인도에서 정부는 ‘위조 및 불법복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a) 강력하고 발전된 법적 체계, (b)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증가, (c) 정부, 집행 기관 및 이해 관계자(즉, 위조 및 불법복제의 영향을 받는 산업) 간의 다각적이고 집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인도에서 만연한 위조 및 불법복제를 유발하는 요인

인도에서 위조 및 밀수가 계속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 a) 위조 및 불법복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릇된 인식:** 인도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위조 또는 불법복제에 연루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가 순전히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한 영향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인식은 이러한 활동이 인도 경제의 여러 지역 및 부문에 위조 및 불법복제가 확산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 b) 국가 차원의 집행 부재:** 인도의 위조 및 불법복제는 지역, 영토 및 특정 품목으로 현지화되고 신디케이트(Syndicate)²⁰⁾화되는 경우가 다수 밝혀졌다. 인도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법적 절차는 조치의 원인이 발생한 지역 수준에서 집행을 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비용 누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인도 전역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 c) 저렴한 가격과 엄청난 이익:**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위조 및 불법복제 제품이 필수가 아닌 품목 또는 편의 용품/제품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구매력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가의 상품에 대한 더 저렴한 변형 또는 대안을 요구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현지의’, ‘브랜드가 없는’ 또는 ‘인지도가 덜한 브랜드’에 대한 공통적인 요건 또는 수요는 위조 또는 저렴한 변종 제품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위조자들, 불법제조업자들에 의하여 활용된다. 즉, 브랜드에 관한 인식은 있으나 이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생산 및 판매되는 저렴한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위조자가 더 많은 위조제품들을 생산 및 판매하도록 장려하게 되는 것이다.
- d) 유연성과 익명성의 장점:** 위조품과 불법복제품의 거래는 모두 소규모로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집행 조치를 예상하여 불법적인 작업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인도에서 대부분의 위조 작업은 전체 작업을 실행하는 개인이나 네트워크 또는 신디케이트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얼굴이 없거나 이름이 없는’ 작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 e)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이니셔티브 부족:** 대부분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은 인도 시장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우선순위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도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을 감안할 때, 기업이 자체적인 유통 및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립하는데 수년이 걸리며, 애프터 세일즈 비즈니스 지원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을 활용하여 많은 개인 및 위조 운영자는 이상황을 활용하고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과 재료를 유통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형태의 지연된 집행은 종종 위조 및 불법복제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나 시장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많은 산업에 해를 입히고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과 다른 많은 관련 상황으로 인해 현재 인도에서 위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믿음이 팽배하게 되었다.

20) 카르텔 중 가장 발달한 형태이고, 카르텔에 가맹된 개개의 기업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카르텔 자신이 공동판매기관을 가지며 가입기업의 상품을 일괄하여 판매할 때, 이 카르텔을 신디케이트라 한다. 이것의 공동판매기관만을 신디케이트라고 할 때도 있다. 신디케이트에서 카르텔의 통제는 가장 완전하게 행해지고 판매통제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학사전, 2011, 박은태)

06.
인도 위조상품
대응 방안

인도의 위조 방지 절차 및 전략

인도에서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위조 및 불법복제 포함)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인, 개인, 사업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지식재산권 법률에 따른 민사적 구제
-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체계 및 구제책
- 국경에서의 조치
- 형사 조치
- 예방 조치 및 활용

A. 지식재산권 법률에 따른 민사적 구제

1. 모든 지식재산권 법령은 금지청구(Injunctions), 손해 배상(Damages) 또는 회계 공개(Rendition of accounts) 형태로 민사적 구제를 제공한다. 민사소송은 관할권이 있는 지방 법원 또는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볼 때 대부분의 인도 법원은 지식재산권 법률에 정통하며 특히 위조가 포함된 경우 소송을 승인할 때 일방당사자에 의해 제기되는 사용 금지 가처분 명령(Ex parte injunctions)을 내리기도 한다. 특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톤 필러 명령(Anton Piller orders): 상표 소유자는 위조품을 찾고 압수하기 위해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의 소유지 또는 소유건물을 방문 할 수 있는 법원 / 지역 위원(Local commissioners)의 임명을 일반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존 도 명령(John Doe orders): 법원이 법원 위원을 임명하고 지명된 또는 지명되지 않은 피고의 건물에 진입 수색 및 압수를 집행하도록 승인하는 특별한 명령이다. 이러한 종류의 조치는 특정 지역, 구역 또는 시장에서 취해지는 위조 조치 수준이 예상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위조자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거나 위조품이 제조, 저장 또는 보존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마레바 가처분 신청(압류명령, Mareva injunctions): 특별한 경우, 불법 거래 또는 위조 상품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 대해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2. 상표권 침해 사건 및 '사칭통용' 사건에 대한 절차는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에 의해 규율된다. 현재 인도의 많은 관할권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은 특정 상업법원(Commercial courts)에 지정되며 그에 속한 법원은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통과시킬 권한을 가진다.

3. 본질적인 특성상 위조 방지 소송은 약식절차(Summary proceedings)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우로 보이며 특히 성공적인 안톤 필러 사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약식절차 시스템에서는 긴 증거 절차 없이 피고에게 통지한 직후에 사건을 판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을 판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다.

<p>✳ 3 suits filed by Adidas Saloman AG in the Delhi High Court against counterfeiters</p> <p>✳ At the initial stage, infringing goods were seized by the Local Commissioner</p> <p>✳ Cases were decreed recently & damages of Rs. 15 lakhs was awarded to Adidas Saloman</p>	
---	--

4. 상표권 침해 행위의 일반적인 유형 외에, 도메인 이름의 부정직한 등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출처 또는 제품의 허위 진술, 동일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의 사용과 같은 측면도 인도 법률 시스템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는 일시적으로 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영구적인 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5. 일부 사례에서 가해자들이 종종 그러한 불법 작업을 복원 및 재개하기 때문에 인도의 법원은 위조에 대한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따라서, 인도의 법원은 대부분의 대규모 위조 사건에서 폐기를 위해 침해 상품을 인도하는 것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허용했다.

6. 견고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유한 인도인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형태의 어문, 드라마, 음악 및 예술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및 사운드 녹음을 보호해 왔다. 베른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과 조화를 이루는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의 증거 및 증명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을 시행하기 위한 의무 사항은 아니다.

7.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도 상표권 침해 사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일련의 민사 소송을 통해 보호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며, 침해 사본 제작을 위한 플레이트(Plates, 모든 저작물의 인쇄 또는 복제에 사용되는 장치 및 모든 기타 기기 등) 소지도 처벌 가능한 위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인도 정부는 상표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콘텐츠'를 홍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극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인도 법원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서, 비디오, 녹음 등 불법복제된 저작권 자료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안톤 필러 명령, 존 도 명령 및 잠정적 금지명령을 승인하고 법원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산을 하고 있다.

9. 특허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에 의해 보호되는 주체도 상표권 및 저작권 콘텐츠의 경우와 유사한 구제책을 통해 보호된다. 디자인의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사칭 통용 사건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지만, 인도의 특허 보호 사례는 인도의 기업이 제조한 특허 제품 및 절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engineering, 분해공학: 다른 회사의 상품을 분해하여 그 생산 방식을 알아낸 뒤 복제하는 것)'으로 인해 자주 의문이 제기되었다.

10. 의약, 국방 관련 및 공중 보건 '발명'의 경우(인도 특허법에 의한), 많은 국제 기술 단체는 인도의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ing)' 체제가 인도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데 걸리는 절차 및 시간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제 3자가 독점 기술을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을 허용케 되고 사업 및 수익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해왔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특허 등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WTO에서 허용하는 요건에 따라 특허 기술의 강제실시의 범위와 조항을 축소하려고 해왔다.

06.
인도 위조상품
대응 방안

B.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체계 및 구제책

정보 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IT Act'), 이하 'IT 법'): IT 법은 컴퓨터 시스템과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 침해 활동을 단속하고자 한다. IT 법은 민사 및 형사 권리의 개시를 허용한다. 형사 사건에서 IT와 사이버 범죄 위반의 경우 및 온라인 미디어 및 플랫폼을 통해 증가하는 위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특히 '도메인 이름 분쟁'과 인터넷 및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무단 활동과 관련하여 IT 법에 따라 취해지는 구제 조치에 의존할 수 있다.

의약품 및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 헬스케어품목, 의약품, 화장품 및 미용제품과 관련된 부문에서 발견되는 위조 제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또한 불량품, 가짜 또는 상표가 잘못된 약품 및 인도로부터의 수출품을 다루는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대다수의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은 이 구제책을 사용하지 않지만(특히 의약품, 약품 및 화장품의 특정 부문에 대한 적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조항이 '감시관'에게 검사뿐 아니라 불량, 허위 또는 브랜드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제품을 압수하고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규정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의약품 및 화장품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품안전표준법은 기관(예: 식품 검사관)이 표준 이하이거나 가짜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압수하고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 법률이다. 또한 동법은 그러한 불법 및 범죄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제조 허가를 중단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현지 제조 및 수입을 통해 불량 식품이나 브랜드가 잘못된 식품을 조달, 판매 또는 유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금세탁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2002, 이하 '자금세탁법'): 자금세탁법의 규정은 '회색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위조 상품을 취급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세금 구조의 범위를 넘어 거래를 체결하는 국제 신디케이트 또는 카르텔의 일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금융사기 구제책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송금수단 및 지급 등에서도 불법적인 자금 세탁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해당 '자금세탁 행위'가 위조 또는 불법복제와 관련된 활동의 일부라고 믿을만한 증거 또는 근거를 가진 경우, 이러한 취지로 가해자 고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C. 국경에서의 조치

1. 관세법(Customs Act, 1962) 및 수입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집행규칙(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orted Goods)Enforcement Rules, 2007)에 따라 침해 상품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상기 규정은 상표, 저작권, 특허,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특정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이 항구에서 위조품을 즉시 압수하기 위해 인도 세관에 자신들의 권리를 등록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브랜드 상품의 수입은 해당 권리 소유자에게 통보되며, 상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상품은 압수되고 수입을 추진한 모든 당사자에게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3. 압수된 위조품은 궁극적으로 권리 소유자의 감독 하에 파기된다. 세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입 되는 위조품에 대한 정보를 받은 권리 소유자도 세관에 통보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세관은 권리가 세관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조품의 반입을 중단했으며 이유는 관세법에 따라 위조품은 그 자체로 금지된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 친 권리 소유자 조항은 인도로 들어오는 위조품 수입을 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인도의 세관은 현재 병행수입품 또는 회색시장의 상품에 대하여, 이들 제품이 밀수된 것이거나 포장 이 위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회색시장의 상품 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들은, 세관에 상표를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국 지점’에서 이와 같은 상품의 품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것은 위조업자들의 상투 적인 수법에 해당하므로, 이 세관의 ‘입국 지점’ 사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세관에서는 상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병행수입 등을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06.
인도 위조상품
대응 방안

D. 형사 조치

1. 상표법, 저작권법, 상품의 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 및 IT 법에 따라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형사 구제책이 제공된다.
2. 상표법, 저작권법 및 상품의 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에 따른 위반 행위는 일반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상황을 인정하여 감형이 가능하다. 인도의 모든 지식재산권법은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범죄 발생 시 더 많은 형량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3. 인도의 형사소송법(Code of Criminal Procedure, 1973)은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규율한다. 범죄 수익 관련 법률(Proceeds-of-crime law)이 지식재산권의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사용하면서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자산은 체포 시 당국에 압수될 수 있다.
4.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는 본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조치를 취하고 수색 및 압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경영을 담당하는 회사의 임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5. 그러나 경찰 및 전문 기관에서 형사조치를 개시하는 경우의 주요한 문제는 각 법 집행 기관의 관할권이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여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여러 관할권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6. 이전에 범죄행위 단속 시에 우려되었던 사항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경찰관의 지식 부족 또는 전문화와 관련이 있었다. 현재는 일부 관할권에서부터는 지식재산권 위반 문제를 인도 경찰청 EOW(Economic Offence Wing)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집행관은 지식재산권법 조항에 대한 인식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형사 구제 조치를 개시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는 경찰이나 법 집행 기관에 접근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소유권 증명 준비, 지식재산권 침해 방식에 대한 정보 및 형사 구제 조치가 시행되는 관할권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권리 소유자들은 민사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자들 또는 대규모 제조업체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집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인도에서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은 경찰과의 지속적인 연락 및 소송 제기 전후의 적극적인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2003년 델리 경찰의 경제범죄팀(Economic Offense Wing, 이하 'EOW')이 민원에 따라 대해 범죄 현장을 단속함.

리바이스(Levi's), 아디다스(Adidas), 리(Lee), DKNY 등 브랜드의 위조 스티커 및 라벨이 인쇄되고 있음

E. 예방 단계 및 조치의 활용

인도는 지식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기에는 아직 인도 특유의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소비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매력적인 투자 시장임은 부정할 수 없다. 모든 개발도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인도 시장에서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의 성장을 처음부터 탐색, 이용 및 활용하기 시작하는 위조 및 불법복제 사업자에게는 '매력 가치(Attraction value)'가 발생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 잠재력과 병행적으로 발전하는 위조 시장으로 인해, 인도에서 운영되는 모든 비즈니스는 이제 다음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운영'
- '지식재산권 침해 조기 식별'
-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장려'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인식 창출'

휴대폰과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은 이에 관한 좋은 사례이다. 1994-95년에 시작된 인도 휴대전화 네트워크 시장은 지난 25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휴대전화 혁명으로 인해 인도 내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50개 이상의 회사와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5000개 이상의 회사 또는 법인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성장과 함께 OEM 업체들이 인도 시장을 공략 하느라 분주한 동안, 위조자와 불법복제품 공급업체는 '저렴한' 또는 '비용 효율적인' 대체품이 될 수 있는 침해 상품의 자체 공급망을 설립하고 오리지널 제품과 '시각적으로 동일한' '위조' 품목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수행하는 몇 가지 예방 조치 및 대책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지 수사관' 또는 '리포터' 네트워크 활용: 위조 방지 조치의 효과는 대부분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빈번히 저지르는 실수는 알려진 형태의 위조 또는 불법복제에 대하여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 관한 세부 정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상 식별을 위해 '현지에서' 수신되는 정보의 초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하게 될 '유통 업체' 또는 '대리인' 네트워크를 지정하게 된다. 영업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모든 형태의 침해, 위반 또는 불법 운영에 대해 매주 또는 매월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현지 수사관 또는 리포터 네트워크(Network of local investigators or reporters)'를 지정하는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추가 비용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네트워크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현지 수준의 조사관 또는 리포터를 임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올바른 접근 방식, 전략을 선택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 전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위조 또는 불법복제 관련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구제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도에서 제약, 자동차 제조 및 명품 제조업체는 종종 여러 매장에서 구매할 '미스터리 쇼핑객'을 지정하여 위조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 불만'에서의 단서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출처를 통하여 '조사자 및 리포터'가 지식재산권 소유자 자체의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절차를 시작한 다음 다른 잠재적인 위치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력은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판매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위조품의 유통 업체 또는 '보관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06.
인도 위조상품
대응 방안

2. 위조 방지 기능의 활용: RFID 태그, 현미경 식별 기능, 바코드, 홀로그램 및 정품 싺과 같은 예방 기술을 사용할 경우 위조 및 불법복제 제품의 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품과 스타일이 상당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현지 인도 기업 및 제조업체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또는 인쇄 스타일 또는 외관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면 인도에서 위조자의 의도를 '축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위조의 정교함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위조 방지 기능의 사용이 이제 인도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이 되었으며 적극 권장되고 있다. '담배 제품', '주류' 및 '소비재'(예: 치약, 비누, 샴푸)와 같은 일부 산업은 절도 외에도 동일한 포장을 사용하여 판매되는 조악한 제품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반면, 대부분의 다른 산업에서는 위조자가 브랜드 이름, 모양, 디자인 및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을 표준화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의 '모양과 느낌'을 수시로 재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위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위조 방지 조치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arolyn Davidson은 1971년에 25달러에 "스우시(swoosh)"를 디자인했다.

인도의 유니레버(Unilever)에서 판매하는 인도의 보통 미용 '비누' 브랜드 럭스(Lux)는 가장 많이 '복제되는' 브랜드 또는 제품 중 하나 1929년 출시된 이래로, 25명 이상의 인도 유명인사들이 1960년대부터 '럭스'를 보증홍보 해왔으며 '럭스'의 포장은 3 ~ 4년마다 변경되었다. 유니레버는 '럭스'의 포장을 지속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제품 위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격', '가격 대비 가치' 및 '브랜드 매력 증대'에 대한 우려도 해결했다.

3.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 및 인식 창출’이라는 정부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 인도 정부와 기타 정부 기관은 점점 더 위조 행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상품 위조 및 불법복제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조치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다. 모든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지식재산권 위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국단위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와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IPAM(이하 ‘셀’)은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권 권한 홍보 및 관리를 위해 인도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셀은 설립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매우 많은 활동을 했다. 셀은 또한 권리 소유자 및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경찰, 세관 및 사법 아카데미와 같은 집행 기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권리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집행팀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Mascot - IP Nani is a tech-savvy grandmother who helps the government and enforcement agencies in combating IP crimes with the help of her grandson “Chhotu” aka Aditya. The IP mascot will spread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mong people, especially children, in an interesting manner.

06. 인도 위조상품 대응 방안

4. 공개 정보 및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장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지식 공유는 모든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위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인도에서는 영향을 받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증거와 비즈니스 이점이 장기적으로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온라인 메시지, 대중 매체 발표 및 기타 형태의 광고를 통해 인도 시장 내에서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형태의 복제, 오용 또는 침해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소유자를 위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 권리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포스터, 광고, 공고 및 웹 사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2-3개월마다 빈번한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공유 및 공개하는 것 외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 내에서는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하여 매우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운영 관련사항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불법복제 및 침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으며, 이 방법에 따르면 개인은 지식재산권 위반을 보고하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온라인 시스템, 전용 콜센터 또는 소비자 헬프라인 번호의 출현으로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일반 사람들을 유인하여 ‘실명 또는 익명’ 기반으로 모든 형태의 의심스러운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들은 그 대가로 보상을 받거나 지식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인센티브제도’가 모든 유형 또는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저작권 위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및 고급 소비자(완전한 위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와 같은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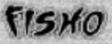
요약하면, 인도 정부가 인도의 위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법 의도 및 필요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취한 거시적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조 및 불법복제의 악영향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수익과 평판의 손실을 통해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법 및 행정 대응 외에도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이해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명확하고 다각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정부와 협력하면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전문 자문을 발전시키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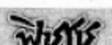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증가하는 불법복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기술적 단계를 개시할 수 있으나, 또한 인도 시장에서 잠재적인 위조 또는 불법복제 관련 위협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 기술’(지속적인 시장 조사, 조사, 온라인 자료수집 등을 통해)의 채택과 함께 인식의 ‘사회적 조치’ 역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TRADE MARK CAUTION

NOTICE is hereby given that **Thai Union Frozen Products Public Company Limited**, a company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ailand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97/112 M. Floor, S.M. Tower, Phaholyothin Road, Samsornai, Phayathai, Bangkok 10900, Thailand is the owner and sole proprietor of following trademarks:-



(Reg. No. IV/3376/2012)



(Reg. No. IV/3371/2012)

The above two trademarks are in respect of:-
 "Meat, fish, poultry and game, meat extracts; preserved, dried and cooked fruits and vegetables; jellies, jams, compotes; eggs, milk and milk products, edible oil and fats; all goods in this class, especially packaged tuna, packaged sardines, packaged mackerel, packaged squids, packaged shrimps, packaged clams, packaged crab meat, packaged frozen sea foods, packaged sea foods, fish sticks, canned mealballs" - Class: 29

Any fraudulent imitation or unauthorized use of the said trademarks or other infringements whatsoever will be dealt with according to law.

U Kyi Win Associates
 for **Thai Union Frozen Products Public Company Limited**,
 P.O. Box No. 26, Yangon.
 Phone: 372416 Dated: 23rd July, 2012

PUBLIC NOTICE

This public notice is being issued by **VE Commercial Vehicles Limited (VECV)** for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public at large that an entity named **M/s. Madhav Electric Co.** along with one **Mr. Yogesh Shridhar** are soliciting customers for sale of certain generators, engines and possibly other related equipment under the name and style of **VECV, Eicher, Volvo Eicher** (and such related proprietary trade names, marks or logos). The details of these persons are as under:

M/s. Madhav Electric Co.	Registered Office at Near Govt. School, Vill-Firozpur, Palwal-121102, Haryana
Mr. Yogesh Shridhar	Resident of A-148/R New Colony, Arya Samaj Road, Palwal- 121102

VECV hereby confirms that the above named persons do not have any authorization or affiliation with VECV whatsoever.

By way of this public notice, the members of general public are informed and advised not to conduct business under the presumption of an association or affiliation with VECV AND note that the products offered or sold by the said persons could well be from 3rd parties other than VECV that may be of inferior quality or spurious or fake or counterfeited.

Anyone engaging, dealing or transacting any business with aforementioned persons shall be doing so at their sole risk, cost and consequence; to the complete exclusion of VECV. VECV (and its related companies) shall not be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losses or damages caused to anyone dealing with the abovenamed persons.

Issued for information to all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and in public interest on this 10th day of September, 2020 by VE Commercial Vehicles Limited.

Registered Office:
 3rd Floor, Select Citywalk, A-3 District Centre, Saket, New Delhi - 110017

Corporate Office:
 Plot No. 96, Sector - 32 Gurgaon - 122001

07.

위조에 관한 사례 연구

위조품은 모든 브랜드의 확립된 명성과 영업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위조 사례가 발생해왔다. 온라인 시장영역에 중·소형 판매자가 유입되면서 브랜드 이름을 훼손하는 위조품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이러한 관행은 브랜드의 상징적 가치를 복제하여 소비자를 더 쉽게 속일 수 있는 명품 제품에서 주로 발견된다.

인도는 위조와의 전쟁에서 초기부터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하고 효과적인 법률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집행 메커니즘은 인도 내 위조자에 대한 흐름을 바꾸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영업권과 평판을 유지하고 위조제품의 위협으로부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장단속을 수행하고 급성장하는 위조업체들을 공개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도의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한 기업들이 위조자에 대항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실무적인 조치 등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 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국기업 및 한국 이외의 국가 기업에서 취하고 있는 위조방지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한-인도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이해관계, 상호 호의 및 높은 수준의 교류로 인하여 진정한 다차원적 관계가 되었다. 인도와 한국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는 2018년에 양자 무역이 215억 달러에 달하고 최초로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근 몇 년간 추진력을 얻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양자 무역은 19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인도와 한국은 상호 보완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2030년까지 양자 무역을 500억 달러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양국간의 투자는 견고해졌고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대기업들이 인도의 신규 제조 시설에 거액을 투자했을 때 2018년 한국의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8억 2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

삼성전자 (Samsung India Electronics Pvt. Ltd.)

인도 최대의 전자 제품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인도의 가전제품 및 내구재 시장에서 선도적인 업체 중 하나이다. 1995년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삼성은 1996년 벵갈루루에 첫 번째 R & D 센터를 설립했다. 삼성의 노력은 5개의 R & D 유닛, 1개의 디자인 센터, 2개의 제조 시설(노이다와 타밀나두에 각각 하나씩)에서 측정할 수 있다. 모든 삼성 휴대폰은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된다. 삼성은 인도에서 생산된 모바일 단말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Make for the World'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2018년 7월 삼성 인도는 노이다에 세계 최대 모바일 공장을 설립했다. 2018년 12월 현재 삼성 인도는 약 70,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공장 확장으로 노이다 시설의 생산 능력은 2020년 6월까지 연간 6천8백만개에서 1억 2천만 개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 전자 (LG Electronics India Pvt Ltd.)

소비자 가전 및 내구재 분야의 세계적 선두 주자 중 하나인 LG는 1997년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년 동안 LG는 인도를 주요 사업 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LG는 벵갈루루에 국내 최대 규모의 R & D 센터를 세웠으며, 인도의 그레이터 노이다와 푸네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제조 시설을 두고 있다. LG 전자는 인도 전역에 40,0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2,000개가 넘는 매장이 독립형 매장이다. 내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이들 시설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하는 데 사용된다. 인도에서 판매량의 약 10%가 수출되고 부품의 95%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된다. LG 전자는 TRA 리서치가 작성한 지난 8건의 브랜드 신뢰 보고서 이후 인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5대 브랜드에 지속적으로 선정되었다.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India Ltd.)

현대의 인도 진출은 1998년 산트로 모델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인도 시장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현대는 하이데라바드에 R & D 시설을 설립했으며 이는 세계 5개 센터 중 하나이다. 스리페룸부두르 시설(첸나이 근처)에서는 연간 700,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미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는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에 세 번째 생산 라인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모델에 대해 인도에서 조립유닛을 수출한다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현대 자동차는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 호주 및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약 8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포스코 (POSCO India Pvt Ltd.)

포스코 인디아(이하 '포스코')는 한국 포스코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다. 2005년 포스코는 인도의 고성장 잠재력과 철강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철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포스코는 마하라슈트라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냉연, 아연 도금, 전기 강판 생산 공장을 설립했으며 푸네, 델리, 첸나이, 하이데라바드에 철강 가공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KIA Motors Pvt Ltd.)

기아자동차는 한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로 안드라프라데시의 아난타푸르에 11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33만 대의 차량 생산 능력을 갖춘 제조 시설을 설립했다. 위에서 언급한 총 44억 달러(추정) 이상을 투자한 회사 외에도, 6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롯데(식품 가공), 쌍용 자동차(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포함된다. 특히 텔랑가나의 카카티야 메가 텍스타일 파크 (KMTP)에 90억 루피 이상을 투자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 한국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 영원 무역의 향후 주요 투자가 예상된다. 이 회사는 주로 인도 수출용으로 야외 활동 및 기술 섬유 제품을 위한 편직 및 직조 의류를 생산할 계획이며 12,000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의 위조 방지 사례

회사: 현대자동차

산업 / 제품: 자동차

2010년에 현대자동차는 현대의 브랜드 로고와 상표를 사용하여 가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한 업체를 겨냥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EOW(Economic Offence Wing), 범죄부(Crime Branch), 델리 경찰의 합동 작전으로 인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델리카슈미르 게이트**에 있는 두 개의 상점 건물과 **델리 비슈누 나가르**에 있는 한 공장 건물에서 현대자동차의 위조 자동차 예비 부품의 무단 보관, 제조, 판매에 대해 동시 현장단속이 이루어졌고 현대 로고가 부착된 위조품이 경찰 당국에 의해 압수되었다.²²⁾

그 이후로 현대자동차는 현대 로고 또는 상표가 부착된 가짜 부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유통 업체 및 상인을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해왔다.

회사: 삼성전자

산업 / 제품: 전자, 스마트폰 등

2013년 12월 2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²³⁾ 첸나이의 일부 상점을 현장 단속하여 삼성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된 가짜 전자 장비를 압수하였고 14명이 체포되었다.

단속은 범죄 지부 범죄 수사부(Crime-Branch Crime Investigation Department, 'CBCID') 비디오 불법복제 셀(Video Piracy Cell) 및 지식재산권 집행자(Enforce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IPR')에 의해 이루어졌다.

압수된 제품의 가치는 500 만 루피가 넘었으며 휴대폰 배터리, 휴대폰 충전기 및 헤드셋이 포함되었다.

또한 등록상표 '삼성(SAMSUNG)', '갤럭시(GALAXY)'의 소유자인 회사, 삼성 전자 vs 미스터 아킬레쉬 티와리 (2018)²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휴대폰, 핸드셋, 핸드헬드 장치, 태블릿, 스마트 폰, 동글 등과 같은 갤럭시 시리즈와 삼성, 하위 브랜드 위조품을 제조 / 판매 /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가짜 제품을 삼성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소비자에게 넘겨 해당 회사의 영업권과 평판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현장단속에서 압수된 물품을 파기하여 삼성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22) Report dated March 10,2010,available at: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hardware/counterfeit-samsung-mobile-phone-parts-seized-eipr/articleshow/27855450.cms>

23) Reported in Economic Times dated December 24, 2013available at: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hardware/counterfeit-samsung-mobile-phone-parts-seized-eipr/articleshow/27855450.cms>

다른 국가의 기업이 위조에 대해 취한 조치

회사 : 타타자동차 (Tata Motors Limited) (인도)

산업 : 자동차 부품

2013년 11월 11일²⁴⁾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타타자동차는 델리에 있는 8개의 가짜 타타 부품 제조업체와 복제 패키지 공급업체를 현장 단속했다. 타타자동차는 타타 순정 부품(Tata Genuine Parts, 'TGP')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 가짜 예비 부품판매를 반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식재산권 집행 및 저작권 보호기관, 타타자동차의 TGP 팀과 법률 팀을 포함한 집행팀은 인도의 주요 도시와 무역 허브에서 제조 및 판매 아울렛 / 위조품 및 포장 센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TGP 팀은 타타자동차 예비품을 구매할 때 고객에게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식별 보조 수단으로 포장에 있는 타타 다알 홀로그램(Tata Dhaal hologram)과 다양한 보안 강화 포장 스티커 및 라벨인 타타 로고가 있는 레이저 마킹 외에도 기어 및 차동 부품에 대한 도난 방지 플라스틱 포장 시리즈를 출시했다.

회사 : 샤오미 (Xiaomi Corporation) (중국)

산업 / 제품 : 전자, 스마트 폰 등

2019년 12월 6일자 언론 보도²⁵⁾에 따르면 위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경찰이 회사 관계자와 함께 **델리 가파르 시장(Gaffar Market, Delhi)**을 현장 단속했으며 13만 루피 이상의 가치로 추정되는 2000개 이상의 샤오미 제품이 4개 공급업체로부터 압수되었다. 이 현장단속에서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은 일부 제품을 포함하여 Mi 파워 뱅크, Mi 넥 밴드, Mi 여행용 어댑터(케이블 포함), Mi 이어폰 기본(마이크 포함), Mi 무선 헤드셋, 레드미 에어 도트, Mi 2-in-1 USB 케이블 등과 같은 다양한 모바일 액세서리가 압수되었다.

회사 : 파이오니아 (Pioneer Corporation) (일본)

산업 / 제품 :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제품,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액세서리 등

2019년 11월 6일자 언론 보도²⁶⁾에 따르면 파이오니아 브랜드의 가짜 자동차 스피커 유통을 저지하기 위해 델리 고등법원이 임명한 지역 위원회의 도움으로 델리와 케랄라 시장에서 민간 현장단속이 진행되었다.

이 현장단속은 스피커 및 트위터(고음 재생용 스피커)와 같은 가짜 아이템을 유통하는 가짜 파이오니아 제품의 제조업체, 도매 판매 업체 및 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델리에서는 **카를바그와 라즈파트 라이** 지역의 전자 소비재 시장에서 현장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케랄라에서는 티루르, 칸누르 및 코친의 인기 시장이 표적이 되었다. 이들 장소는 자동차 액세서리의 주요 허브이며 전자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다. 엄청난 양의 가짜 파이오니아 스피커와 트위터가 발견되었고 모든 위조품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현지 위원이 상점 주인의 각 구내에서 압수했다.



24) Samsung Electronics Company vs Mr. Akhilesh Tiwari &Ors (2018) 252 DLT 545

25) <https://digitalterminal.in/news/fake-xiaomi-products-seized-at-new-delhi-in-a-raid-conducted-by-police/17463.html>

26) <http://bwautoworld.businessworld.in/article/Police-Conduct-Raid-Against-Counterfeit-Products-In-Delhi-Kerala/06-11-2019-178597/>

회사 : 휴렛팩커드 (Hewlett-Packard Company) (미국)**산업 / 제품 : 스마트 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2019년 12월 9일자 언론 보도²⁷⁾에 따르면 위조 및 사기 방지(Anti-Counterfeiting and Fraud, 'ACF')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회사 관련 8억 루피 상당의 위조 제품을 국가에서 압수했으며 델리-수도 지역에서 3억3천5백만 루피 상당이 압수되었다. 벵갈루루는 압수액에서 2억2천만 루피로 2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 각각 6천5백만 루피와 3천 5백만 루피로 뭄바이와 첸나이가 그 뒤를 이었다.

당국은 170개 건물을 현장단속하고 인도 전역에서 144명의 사람들을 체포했으며 현장에서 완성 및 미완성 카트리지, 많은 라벨 및 포장 재료가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 힌두스탄 유니레버 (Hindustan Unilever Limited) (인도)**산업 / 제품 : FMCG**

힌두스탄 유니레버(이하 '유니레버')는 인도의 FMCG 부문에서 가장 큰 업체이다. 유사한 로고나 포장을 사용하는 위조 제품을 단속하려는 시도에서 회사는 평균적으로 최소 2건의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를 접수했다.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봄베이 고등법원에 접수되었다. 2019년 3월 유니레버는 **수라트 인근 바르돌리의 회사인 마하데브 비누 공장(Mahadev Soap Factory)**을 상대로 봄베이 고등법원에 상표권 침해를 접수했다. 유니레버는 구자라트에 본사를 둔 세탁용 파우더 브랜드인 '고윈(Go-Win)'이 자사의 대량 판매용 세제 브랜드인 '휠(Wheel)'과 동일한 포장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니레버의 브랜드인 '바세린(Vaseline)' 및 '페어 & 러블리(Fair & Lovely)'와 유사한 '파세린(Fasaline)' 및 '페어 & 라이프(Fair & Life)'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나비 뭄바이에 본사를 둔 글린트 화장품(Glint Cosmetics)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²⁸⁾

힌두스탄 레버 & Anr v. 사티시 쿠마 사건에서(2012)²⁹⁾, 회사는 피고가 다양한 FMCG 브랜드를 위조했으며 가짜 개인위생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여러 날짜에 걸쳐 피고의 건물에서 범죄를 밝히기 위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의 현장단속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불법 행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는 이 법원의 잠정적 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명령이 내려졌다.

델리 고등법원은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고 특히 피고는 백만 루피에 달하는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회사 : 버버리(Burberry Limited) (영국)**산업 / 제품 : 의류, 신발 및 패션 액세서리**

버버리디가즈(2017) 사건에서³⁰⁾, 원고 버버리의 등록상표인 'BURBERRY'가 피고의 웹사이트 www.digaaz.com에서 셔츠와 핸드백과 같은 위조품을 판매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해당 문피고가 다른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서 또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포함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고의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27) <https://www.gizbot.com/laptop/news/hp-seizes-counterfeit-products-worth-rs-80-crore-in-india-064247.html>

28) Reported in Economic Times dated April 24, 2019, available at: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cons-products/fmcg/ipr-trademark-violation-hul-steps-to-legal-action-to-curb-counterfeit-menace/articleshow/69017331.cms?from=mdr>

29) Hindustan Lever Ltd. & Anr v. Satish Kumar (2012)190 DLT 593

30) Burberry Limited and Ors.v.Digaaz.Com/Digaaz-Ecommerce Pvt.Ltd.and Ors2017 SCC OnLine Del 10617

07.
위조에 관한
사례 연구

회사: 혼다 모터사이클과 스쿠터 인디아 (Honda Motorcycle and Scooter India) (일본 혼다 자동차 회사 자회사)
산업 / 제품: 2 개 - 휠러 및 예비 부품

혼다 모터사이클과 스쿠터 인디아(Honda Motorcycle and Scooter India, 이하 'HMSI')는 전국에서 혼다의 위조 부품을 취급하는 상인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련의 단속을 실시했다. 2019년 6월³¹⁾에 혼다 지식재산권 집행 팀은 델리와 쿠타크시에서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4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4백 9십 만 루피 상당의 가짜 상품을 압수했다.

HMSI는 2017년에 국제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이끄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집행 팀을 구성했다. 혼다 순정 부품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조업체는 혼다 위조 부품의 거래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형사 조치를 개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3년 간 해당 팀은 인도 전역에서 94,000개의 위조된 혼다 부품 중 약 2 천만 루피 상당의 부품을 압수했다.

회사: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 (USA)
산업 /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v. 미스터 디렌 고팔(2009) 사건에서, 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의 불법복제 및 무허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고, 대리인, 직원 및 자신을 대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을 제지하기 위한 일방당사자에 의해 제기되는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잠정적 금지 명령 신청과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고 피고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CD 및 기타 저장 및 복제 매체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며 회사의 기술 전문가와 감사 보고서 및 라이선스 요약을 준비하고 불법 복제된 버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봉인하는 지역 위원을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원은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고 지역 위원의 임명을 허용했다. 또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이 발견된 경우 피고에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31) Reported in Financial Express dated July 30,2019,available at:<https://www.financialexpress.com/auto/bike-news/honda-2wheelers-india-raids-fake-spares-parts-makers-goods-worth-rs-2-crore-seized/1660721/>

부록 - 01

인도의 지식재산권 법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2 (zb)항 “상표”의 정의

“상표”는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람의 그것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을 의미하고 상품의 모양, 포장 및 색상 조합을 포함하며,

(i) XII 장(제 107 조 제외)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자로서 해당 표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의 연관성에 대하여 표시 또는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또는 표장 및

(ii) 이 법의 다른 조항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자 또는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해당 표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의 연관성에 대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성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또는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으로, 인증상표 또는 단체상표를 포함한다.

29항 등록상표의 침해

(1) 상표의 사용이 상표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거래 과정에서 사용하는 등록된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허가된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등록된 소유자가 아닌 자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침해된다.

(2) 등록상표는 등록된 소유자가 아니거나 거래 과정에서 허가된 사용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침해된다.

- (a)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및 해당 등록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또는
- (b)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및 해당 등록상표에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성 때문
- (c)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및 그러한 등록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동일성은 대중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등록상표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3) (2)의 (c)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대중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4) 등록상표는 등록된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허용된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되며, 침해되는 표장은 다음과 같다.

- (a)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 (b)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 (c) 등록상표가 인도에서 명성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고유한 특성이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고유한 특성이나 평판에 해를 입힌다.

(5) 등록상표는 해당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급하는 사업 관계자의 상표명 또는 상표명의 일부 또는 사업 관계자의 이름 또는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된다.

(6) 본 항의 목적을 위해 개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상표를 사용한다.

- (a)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등록상표를 부착
- (b) 판매용 상품을 제공 또는 노출하거나, 시장에 출시하거나, 등록상표에 따라 이러한 목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거나, 등록상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또는 공급
- (c) 표장에 따라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 (d) 비즈니스 문서 또는 광고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한다.

(7) 상표를 적용할 때 상표의 적용이 소유권자 또는 라이선스 취득자에 의해 정당하게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자가 상품의 라벨링 또는 포장, 비즈니스 문서,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자료에 등록상표를 적용하는 경우 등록된 상표가 침해된다.

(8)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상표의 광고에 의해 침해된다.

- (a) 산업 또는 상업적 문제에서 선량한 관행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이에 반하는 경우
- (b) 상표의 고유한 성격에 해를 입히는 경우
- (c) 상표의 평판에 위배되는 경우

(9) 등록상표의 특징적인 요소가 단어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경우, 상표는 해당 단어의 구두 사용뿐만 아니라 시각적 표현에 의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항에서 표시 사용에 대한 참조는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

2 (y)항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i)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
- (ii) 영화 촬영용 필름;
- (iii) 사운드 녹음;

22항 - 출판된 문학, 연극, 음악 및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기간

이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가 시작된 날로부터 60년까지 저자의 생애 동안 출판된 모든 어문, 드라마,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에 대해 존속한다.

설명. 본 항에서 저자에 대한 언급은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51항 - 저작권 침해시

(1) 다음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된다.

- (a) 본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등록관(Registrar of Copyrights)에 의하여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여된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관할 당국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하는 자가
 - (i) 이 법에 의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여된 독점적 권리를 수행하거나,
 - (ii) 커뮤니케이션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의 형태로 이익 향유를 허용하는 경우. 단,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침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b) 어떤 사람이
 - (i) 판촉 또는 이를 위한 고용, 판매 또는 이를 위한 고용, 또는 그러한 판매 또는 고용을 위한 전시 또는 판촉
 - (ii) 거래 목적으로 또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
 - (iii) 공공의 무역 전시회를 통해, 또는
 - (iv) 인도로 [***],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본을 수입

단, 하위 조항 (iv)의 어떤 내용도 수입업자의 개인 및 국내사용을 위한 저작물의 사본¹ 부를 수입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 본 항의 목적에 따라, 어문, 드라마, 음악 또는 영화 촬영 필름 형태의 미술 저작물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2(d)항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수공예적, 기계적 또는 화학적인지를 불문하고 또는 분리 또는 결합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 공정 또는 수단에 의하여 2차원 또는 3차원 또는 두 가지 형태를 불문하고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또는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며, 물품에 대하여는 오직 시각에 의하여만 판단한다. 다만, 구조의 모드나 원리 또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기계장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2항 (c)의 미술 저작물 또는 인도 형법 제479조의 재산표장(property mark), 무역 및 상품 표장법(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제2조 (1)(v)의 상표를 포함하지 않는다.

11항 등록에 의한 저작권

- (1)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의 등록된 소유자는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 (2) 상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감시관(Controller)에게 저작권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 지불 시 감시관은 원래 기간인 10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의 두 번째 기간 동안 저작권 기간을 연장한다.

특허법(The Patents Act, 1970)

2(m)항 “특허”의 정의

“특허”는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의미한다;

53항 특허 기간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2002년 개정 특허법 시행 후 부여된 모든 특허의 기간 및 만료되지 않았고 효력이 중단되지 않은 모든 특허의 존속기간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설명. 본 항의 목적 상, 인도를 지정하는 PCT에 따라 출원된 국제 출원의 경우 특허 기간은 PCT에 따른 국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2) 특허는 갱신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또는 규정될 수 있는 연장된 기간 내]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 또는 동 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상실한다.

(3) 유효한 다른 법률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갱신 수수료 미납 또는 특허 기간 만료로 인한 특허권의 만료 시, 상기 특허권의 대상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104A항 침해 소송시 증명 책임

(1)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의 발명 대상이 제품을 취득하는 절차인 경우, 법원은 다음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특허 대상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사용한 방법이 특허 방법과 다른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a) 특허 발명대상이 새로운 제품을 취득하는 방법인 경우, 또는

(b) 동일 제품이 해당 공정에 의하여 생산될 가능성이 있고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얻은 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실제로 사용된 공정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경우, 특허권자 또는 그로부터 특허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얻은 자가 해당 제품이 발명 대상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제품과 동일한 것임을 먼저 증명함

(2) 법원은 당사자가

(1) 항에 의한 증명책임을 해소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제조 또는 상업적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부록 - 02

약어목록

ACMA	자동차 부품 제조협회	ITSA	국제 조세인지 협회
AGMA	회색시장 및 위조품 감소 연합	KMTP	카카티야 메가 텍스타일 파크
ASPA	인증 솔루션 제공 업체 협회	KOTRA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
BASCAP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비즈니스 조치	LV	루이비통
CBCID	범죄 지부 범죄 수사부	MPA	미국영화협회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MPDA	영화 배급사 협회
CGPDTM	특허(및 디자인, 상표 관리)청	OECD	경제 협력 개발기구
CIPAM	지식재산권 진흥관리 셀	OEMs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DIPP	산업 정책 및 진흥부	PCT	특허 협력 조약
DPIIT	산업 및 내부 무역 진흥부	PPE	개인 방호 장비
EIPR	지식재산권 집행자	SIPP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촉진 계획
FICCI	인도 상공 회의소	SSFFC	표준 이하, 가짜, 허위 라벨, 조작 및 위조
FICCI CASCADE	밀수 및 위조 행위 방지위원회	TF - CIT	불법 거래 대응 태스크 포스
FMCG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TIFAC	기술 정보, 예측 및 평가위원
HMSI	혼다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 인디아	TRIP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
HP	휴렛팩커드	UK	영국
IACC	국제위조방지연맹	US/USA	미국
ICC	국제 상공 회의소	WHO	세계보건기구
IT	정보 기술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IT 법	정보기술법	WTO	세계무역기구
ITA	국제 상표 협회		

부록 - 03

위조 방지 조치를 위한 인도 내 기관 목록

인도의 지식재산권 기관

정부 기관

1. CIPAM(지식재산권 진흥관리 셀, 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

DPIIT의 후원을 받는 전문 기관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조치를 보장하고 국가지식재산권 정책의 목표를 해결한다. CIPAM은 지식재산권 인식, 상업화 및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착수 단계와는 별도로 지식재산권 절차의 단순화 및 능률화를 지원한다.

2. 기술 정보, 예측 및 평가위원회(Technology Information, Forecasting, and Assessment Council, 'TIFAC')

과학기술부 산하의 자치 기관으로, 인도 / 외국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특허 검색 시설: (www.tifac.org.in)을 제공한다.

민간 기관

1. EIPR

뭄바이에 본사를 둔 독립기관이며 인도 브랜드 소유자에게 금지 및 집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가 소속된 국제 태스크 포스

정부 기관

인도는 금융대책 태스크 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 아시아 태평양 그룹(Asia Pacific Group), 유라시아 그룹(Eurasian Group) 및 인터폴(Interpol) 과 같은 주요 국제 그룹 및 기관의 회원이다. 인도의 중앙수사부(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는 회의 모듈 중 하나에 지식재산권을 포함시켰으며 인터폴은 무역 기관과 업계 대표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불법 국제 무역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또한 인도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조직은 위조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ITA 및 BASCAP와 같은 조직과 협력하고 있다.

위조 방지 조직

- GS1 인디아(GS1 India)
- 인터그라프(Intergraf)
- 국제 조세인자 협회(International Tax Stamp Association, ITSA)
- 걸프 브랜드 보호 그룹(Gulf Brand Protection Group)
- 세계 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세계 베어링 협회(World Bearing Association (Stop Fake Bearings))
- 세계 지식 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OECD 불법 거래 대응 태스크 포스(TF-CIT)(OECD Task Force on Countering Illicit Trade (TF-CIT))
- 스톱 페이크(Stopfakes)
- 반도체 산업 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 위조약품과 전쟁(Fight the Fakes)
- 리액트(React)
- 품질 브랜드 보호위원회(Quality Brands Protection Committee)
- 국제 홀로그램 제조업체 협회(International Hologram Manufacturers Association)
- 국제 위조 방지 연합(The Anti-Counterfeiting Group)
- FICCI 캐스케이드(FICCI CASCADE)
- 위조 킬즈(Counterfeiting Kills)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비즈니스 조치(Business Action to Stop Counterfeiting and Piracy, BASCAP)
- 위조 방지 그룹(The Anti-Counterfeiting Group)
- 인증 솔루션 공급자 협회(Authentication Solution Providers' Association)

관련법령 및 참고문헌

A. 법령

- a) 상표법(Trademarks Act, 1999), 상표 규칙(Trademarks Rules, 2017)
- b)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 저작권 규칙(Copyright Rules, 2013)
특허법(The Patent Act, 1970), 특허 규칙(Patents Rules, 2003)
디자인법(Designs Act, 2000), 디자인 규칙(Design Rules, 2001)
- c)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Act, 1999)
- d) 반도체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법(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Act, 2000)
- e) 식물과 품종 및 농민 권리 보호법(The Protection of Plants and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 2001)
- f) 생물 다양성 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 g)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 h) 의약품 및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i) 식품 안전 및 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 j) 자금 세탁 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2002)
- k) 관세법(Customs Act 1962), 지식재산권 집행규칙(Intellectual Property Rights(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
- l)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
- m) 형사소송법(Code of Criminal Procedure, 1973)
- n) 인도 형법(Indian Penal Code, 1860)

B. 보고서

- a) 2019 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Special_301_Report.pdf
- b) 2018년-2019년 CGPDTM 연간 보고서: http://www.ipindia.nic.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IP_India_Annual_Report_2019_Eng.pdf
- c) 국경없는 세계의 합법적인 기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 (FICCI CASCADE): [https://www.ficcicascade.in/wp-content/upc\)loads/2018/07/FICCI-CASCADE-GT-ReportEmerging_Challenges_Report_illicit-trade-1-1.pdf](https://www.ficcicascade.in/wp-content/upc)loads/2018/07/FICCI-CASCADE-GT-ReportEmerging_Challenges_Report_illicit-trade-1-1.pdf)
- d) ASPA 보고서 : 2020 년 인도의 위조 현황: [https://www.aspaglobal.com/pre_upload/nation/1596346415-aa5b4e96d33c56ed\)98087d521a2ae56ad-202007-The-State-of-Counterfeiting-in-India.pdf](https://www.aspaglobal.com/pre_upload/nation/1596346415-aa5b4e96d33c56ed)98087d521a2ae56ad-202007-The-State-of-Counterfeiting-in-India.pdf)
- e) 인도의 위조, 불법복제 및 밀수에 대한 보고서 - FICCI CASCADE, BASCAP 및 ICC의 영향 및 잠재적 솔루션

C. 기사

- a) CIPAM에 의한 경찰 용 지식재산권 단속 툴킷: <http://cipam.gov.in/wp-content/uploads/2019/11/Toolkit-CIPAM.pdf>
- b) 세관 공무원들을 위한 지적 재산 도구 키트 (FICCI)
- c) 경찰 공무원들을 위한 지적 재산 도구 키트 (FICCI)

부록 - 03

관련법령 및 참고문헌

D. 글로벌 랭킹

- a)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랭킹: <https://www.startupblink.com/>
- b) 2020년 7월 16일자 이코노믹 타임즈: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dicators/india-ranks-3rd-in-global-manufacturing-locations-among-48-countries-shows-report/articleshow/77000413.cms?from=mdr>
- c) 2년마다 진행되는 LPI 글로벌 랭킹 2018: <https://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2018>
- d) 글로벌 혁신 지수 2020: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gii_2020.pdf
- e) 2020년 6월 16일자 이코노믹 타임즈: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dicators/india-ranked-43rd-on-imds-world-competitiveness-index-singapore-on-top/articleshow/76404222.cms>
- f) 세계은행의 2020년 비즈니스 시행 보고서: <http://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688761571934946384/pdf/Doing-Business-2020-Comparing-Business-Regulation-in-190-Economies.pdf>

E. 뉴스및 보도 자료

a) 2019 년 7 월 30 일자 파이낸셜 타임즈:

<https://www.financialexpress.com/auto/bike-news/honda-2wheelers-india-raids-fake-spare-parts-makers-goods-worth-rs-2-crore-seized/1660721/>

b) 2019 년 4 월 24 일자 이코노믹 타임즈: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cons-products/fmcg/ipr-trademark-violation-hul-steps-up-legal-action-to-curb-counterfeit-menace/articleshow/69017331.cms?from=mdr>

c) 2019 년 11 월 6 일자 BW 오토월드:

<http://bwautoworld.businessworld.in/article/Police-Conduct-Raid-Against-Counterfeit-Products-In-Delhi-Kerala/06-11-2019-178597/>

d) 2019 년 12 월 9 일자 미디어 보고서:

<https://www.gizbot.com/laptop/news/hp-seizes-counterfeit-products-worth-rs-80-crore-in-india-064247.html>

e) 2019 년 12 월 6 일자 미디어 보고서:

<https://digitalterminal.in/news/fake-xiaomi-products-seized-at-new-delhi-in-a-raid-conducted-by-police/17463.html>

f) 2010 년 3 월 10 일자 이코노믹 타임즈: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hardware/counterfeit-samsung-mobile-phone-parts-seized-eipr/articleshow/27855450.cms>

g) 2013 년 12 월 24 일자 이코노믹 타임즈: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tech/hardware/counterfeit-samsung-mobile-phone-parts-seized-eipr/articleshow/27855450.cms>

h) 2013 년 11 월 11 일자 보도 자료:

<https://www.tatamotors.com/press/tata-motors-steps-up-its-on-going-campaign-against-counterfeit-spares/>

작성자

Suri & Company

감수자

Buddtree

KOTRA 자료 20-252

인도 위조상품 유통 대응 가이드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2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뉴델리 무역관 IP-DESK

I S B N 979-11-6490-602-4 (93320)

979-11-6490-603-1 (95320)(PDF)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인도 위조상품 유통 대응 가이드